

 <p>거창군 Geochang County</p> <p>공보는 공문서로서 효력을 갖는다.</p>	<h1 style="font-size: 48px; margin: 0;">공 보</h1> <p style="font-size: 24px; margin: 0;">제727호 2019. 12. 4.(수)</p>	
---	---	---

선 결	기관의 장

훈 령

제435호 거창군 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 전부개정규정 3

고 시

제2019-140호 도로명주소 고시 25

공 고

제2019-1488호 거창군 계획시설(교통시설:소로3-47호선) 사업 실시계획 인가 및
사업인정에 대한 주민의견 청취를 위한 열람공고 27

제2019-1496호 공시송달 공고 29

제2019-1504호 거창군 계획시설(교통시설:소로2-196호선, 주차장4호)
사업인정에 대한 주민의견 청취를 위한 열람공고 30

제2019-1509호 거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32
의회사무과 공고 제2019-23호 「거창군 걷는 길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108

회 램									
-----	--	--	--	--	--	--	--	--	--

발 행 : 거창군

편 집 : 기획예산담당관 (055-940-3043, 행정 3043)

※ 거창군 공보는 거창군 홈페이지(<http://www.geochang.go.kr>)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거창군 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 전부개정
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거 창 군 수

서 명 생 략

2019년 12월 4일

거창군 훈령 제435호

거창군 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 전부개정규정

거창군 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거창군 공간정보 보안관리 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와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 기본지침」에 따라 거창군 소관 공간 정보에 관한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공간정보를 생산·구축·관리·유통 및 활용하는 본청 및 직속기관·사업소·읍·면(이하 “소속기관”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간정보”란 지상·지하·수상·수중 등 공간상에 존재하는 자연적 또는 인공적인 객체에 대한 위치정보 및 이와 관련된 공간적 인지 및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말한다.

2.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란 공간정보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사용자가 검색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가공한 정보의 집합체를 말한다.
3. “공간정보체계”란 공간정보를 효과적으로 수집·저장·조작·분석·표현할 수 있도록 서로 유기적으로 연계된 컴퓨터의 하드웨어·소프트웨어·데이터베이스 및 인적 자원의 결합체를 말한다.
4. “공간정보유통망”이란 공간정보의 생산자, 관리자 및 사용자를 서로 연결하는 통신망을 말한다.
5. “관리부서”란 공간정보를 생산·구축·관리·유통 및 활용하는 본청 및 소속기관의 소관부서를 말한다.

제2장 공간정보 보안 관리체계

제4조(보안책무) 군수는 소관 공간정보 및 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를 보호할 책무가 있으며, 그 보호에 필요한 보안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공간정보 보안담당관) ① 공간정보 보안담당관(이하 “보안담당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된다.

1. 본청: 민원소통과장
 2. 소속기관: 공간정보업무 담당과장(직제상 과장이 없는 경우 소속기관의 장)
- ② 보안담당관이 공석 중인 경우에는 다음 하위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보안담당관의 임무) ① 보안담당관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공간정보 보안업무의 계획 수립 및 시행
 2. 공간정보의 생산·구축·관리·유통 및 활용에 따른 보안대책 마련
 3. 공간정보의 보안관리를 위한 감사·지도·점검 및 교육
 4. 공간정보의 보안진단 및 현황 조사
 5. 공간정보 보안심의위원회 운영 지원
 6. 그 밖의 공간정보 관련 보안업무
- ② 본청 보안담당관은 공간정보 보안업무에 관하여 관리부서의 장과 소속기관의 보안담당관을 지휘·감독한다.

제7조(공간정보 보안심의위원회의 설치) 군수는 공간정보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공간정보 보안심의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 한다. 이 경우 거창군정조정 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신한다.

1. 공간정보 보안업무 기본계획의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2. 제9조에 따른 공간정보의 세부 분류기준에 관한 사항
3. 제19조 및 제20조에 따른 공간정보의 공개 여부 및 공개 활용에 따른 보안대책
4. 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 보호대책
5. 그 밖에 공간정보 보안업무에 관한 주요 사항

제8조(의안심의 요구 및 처리절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7조 각 호의 심의사항에 대하여 위원회에 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1. 위원회의 위원
2. 보안담당관 및 관리부서의 장

제3장 공간정보 분류기준 및 관리

제9조(공간정보의 분류) ① 공간정보는 다음 각 호의 기본 분류기준에 따라 구분하며, 세부 분류기준은 별표 1에 따른다.

1. 비공개 공간정보
 - 가. 공개될 경우 국가안보에 유해한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어 비밀로 분류된 공간정보
 - 나. 법률 또는 법률에 의한 에 따라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공간정보
2. 공개가 제한되는 공간정보(이하 “공개제한”이라 한다)
 - 가. 공개될 경우 공공의 안전과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공간정보
 - 나. 공개될 경우 개인정보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공간정보
 - 다. 그 밖에 공개될 경우 관리기관의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되는 공간정보
3. 공개 공간정보: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공간정보

② 관리부서의 장은 소관 공간정보를 제1항의 분류기준에 따라 별지 제1호 서식에 비공개, 공개제한, 공개로 분류·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비공개·공개제한 공간정보의 취급) ① 비공개 또는 공개제한 공간 정보는 그 공간정보와 업무상 관련이 있는 사람에 한하여 취급할 수 있고 일반인에게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비공개 공간정보는 적정등급의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관리하여야 한다.

③ 비공개 또는 공개제한 공간정보의 누설·유출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관책임자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

1. 보관책임자 정: 관리부서의 장
2. 보관책임자 부: 관리부서의 담당주사

④ 비공개 또는 공개제한 공간정보 취급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4장 공간정보 보호대책

제11조(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의 보호) ① 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의 훼손·파괴·유출 등을 방지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보호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관리부서의 장을 보안관리책임자로 지정
2. 데이터베이스 보관 시설에 대한 출입통제 등 외부로부터 위해 방지
3. 데이터베이스 복제(복사)본을 제작하여 철제용기 등에 별도로 보관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관리대장의 비치 및 기록유지
4. 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접근 권한 구분
 - 가. 부서 및 사용자별 ID·비밀번호 부여, 자료유형(레이어)별 접근권한의 제한
 - 나. 작업범위는 소관업무에 따라 열람·출력·갱신 등으로 제한
 - 다. 열람은 필요내용에 따라 기본항목, 전 항목 등으로 구분
 - 라. 공간정보 취급자 외에 업무상 필요에 따라 비공개 또는 공개제한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려는 자는 보안관리책임자의 사전

허가를 받은 후 접근

5. 비공개 및 공개제한 공간정보목록 작성 및 관리대장 비치(별지 제1호 서식에 기록·관리한다)
6. 해킹 등 불법접근 및 컴퓨터 바이러스 예방대책 강구
- ② 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는 열람·전송·출력 등 사용내역 확인이 가능하도록 전산시스템을 구축·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공간정보유통망 관리) 공간정보의 위·변조, 불법유출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공간정보 유통망 보호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공간정보유통망 관리부서의 장을 보안관리책임자로 지정
2. 방화벽 등 침입방지 및 감시시스템 설치·운영
3. 인터넷 등 외부망과 분리 설치 및 해킹과 컴퓨터 바이러스 예방대책 마련
4. 공간정보 유통망에 대해서는 월 한 번 이상 점검·확인

제13조(비공개 또는 공개제한 공간정보의 복제 등 제한) ① 비공개 또는 공개제한 공간정보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복제·복사 또는 출력할 수 없다.

1.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복제·관리하는 경우
2. 비공개 공간정보를 복제·복사 또는 출력토록 군수의 허가를 받은 경우
3. 공개제한 공간정보를 복제·복사 또는 출력토록 보안담당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

② 비공개 또는 공개가 제한되는 공간정보를 복제·복사 또는 출력한 경우에는 그 원본과 동일하게 분류하고, 대외비 이상으로 관리되는 경우에는 사본번호를 부여하고 예고문을 명시하여야 한다.

③ 비공개 또는 공개제한 공간정보의 복제·복사를 제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비밀(대외비)표지 또는 예고문 상단에 다음과 같이 붉은색으로 기입하여야 한다.

이 자료는 관리책임자의 허가 없이 복제·복사할 수 없음

④ 비공개 또는 공개제한 공간정보를 복제하는 경우에는 공개 공간정보와 구분하여 별도의 매체에 저장하여야 하며, 비공개 또는 공개제한 공간

정보를 복제·복사 또는 출력한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제14조(공간정보의 국외반출 금지) ① 비공개 또는 공개제한 공간정보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외로 반출할 수 없다.

1. 대한민국 정부와 외국 정부 간에 체결된 협정 또는 합의에 따라 상호 교환하는 경우
 2. 정부를 대표하여 외국 정부와 교섭하거나 국제회의 또는 국제기구에 참석하는 사람이 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경우
- ② 제1항에 따라 공간정보를 국외로 반출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경남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5조(보호구역 설정 및 출입통제) ① 보안담당관은 공간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전산실 등 필요한 장소를 보호구역으로 설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보호구역에 대하여는 관리책임자를 지정하고 보호대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보호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출입 인가자를 사전에 지정하고, 비인가자는 관리책임자의 허가를 받은 후 안내를 받아 출입
2. 무단출입 방지를 위해 출입문에 생체·카드 인식기 및 자동잠금장치 설치
3. 모든 출입자는 출입통제 대장에 출입사항을 기록(단, 생체·자동인식기 등을 통한 자동출입기록으로 대체 가능)
4. 출입구에 CCTV를 설치하고 특이사항 발생 시 관리책임자에게 즉시 통보될 수 있도록 상황전파체계 구축
5. 비인가카메라·휴대폰·휴대용저장매체 등의 보관 용기를 출입구에 비치, 불법 촬영 및 자료유출 방지
6. 그 밖에 보호구역의 보호에 필요한 사항

제16조(공간정보의 외주용역) ① 비공개 또는 공개제한 공간정보의 생산·구축·관리·유통 및 활용 등을 위하여 외주용역 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

음 각 호의 보안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계약서상에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7조에 따른 공간정보 보호의무와 법 제38조에 따른 비밀준수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조치사항 명시
 2. 참여인원에 대한 신원확인, 서약집행 및 보안교육
 3. 작업장소를 통제구역 또는 제한구역으로 설정
 4. 용역종료 시 성과물과 제공된 각종 관련 자료 회수
 5. 그 밖의 보안관리에 필요한 사항
- ② 비밀로 분류된 공간정보의 외주 용역 시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비밀취급인가특례업체로 지정된 업체를 이용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의 공간정보를 외주용역 할 때에는 미리 보안책임자를 지정하여 용역업체(공간정보 수집·제작 현장사무소 포함)에 대한 보안관리 실태를 확인하고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7조(외국인 보안관리) ① 군수는 외국인을 공간정보 관련 업무에 종사하게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보안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신원확인, 신상기록부 작성·유지, 보안교육 및 서약 집행
 2. 계약서에 기밀 누설·유출 시 해고 및 손해배상책임 명시
 3. 비공개 등 중요 공간정보 취급 및 보호구역 출입 차단대책
- ② 군수는 제1항의 외국인에 대한 보안상 위험하고 유해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공간정보에 대한 보호조치를 먼저하고, 즉시 국가정보원장에게 관련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 ③ 관리부서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공간정보에 대한 보호조치를 먼저하고, 즉시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8조(안전반출 및 파기계획) ① 군수는 유사시에 대비하여 공간정보를 안전하게 보호·반출 또는 파기할 수 있도록 안전반출 및 파기계획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하며, 공간정보의 안전반출 및 파기계획은 별표2와 같다.

② 관리부서의 장은 자체 실정에 맞는 공간정보 안전반출 및 파기계획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5장 공간정보 공개 요건 및 절차

제19조(공개제한 공간정보의 공개 요건) ① 공개제한 공간정보에 대하여 학술 연구 등의 목적으로 활용하려는 자 또는 기관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미리 군수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승인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확인·검토 후 제공할 수 있다.

1. 성명·주소·생년월일 등 신원사항
2. 소속기관·단체 및 직책
3. 사용목적 및 타당성
4. 활용 후 관리대책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로 하는 사항

③ 공개제한 공간정보를 제공한 때에는 제공일자, 자료의 내용 및 제공방법 등 관련사항을 별지 제4호서식에 기록·유지하고, 공간정보 이용신청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공개제한 공간정보 인수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20조(비공개 공간정보의 공개 요건) ① 비공개 또는 공개제한 공간정보는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공개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공개할 자료의 내용과 공개목적·시기 및 방법 등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비공개 또는 공개제한 공간정보를 공개할 경우 미리 경남도지사와 협의를 하고 필요한 보안조치를 하여야 하며, 비공개 공간정보를 제공한 때에는 제공일자, 자료의 내용 및 제공방법 등 관련사항을 별지 제4호서식에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제21조(비공개 또는 공개제한 공간정보의 재분류) ① 군수는 비공개 또는 공개가 제한되는 공간정보가 기간의 경과 등으로 비공개 또는 공개제한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에는 해당 공간정보를 공개 대상으로 재분류할 수 있다.

② 비밀로 분류된 공간정보는 「보안업무규정」 제15조에 따라 재분류한다.

제6장 공간정보의 보안지도 및 보안사고 조치

제22조(보안지도 및 점검) ① 군수는 공간정보 관리부서의 공간정보 보안 관리 실태를 확인하고 개선대책을 강구하기 위하여 연 한 번 이상 보안 지도 및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보안점검은 정기점검과 수시점검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다만, 정기 점검은 제23조의 보안감사로 갈음할 수 있다.

③ 보안지도 및 점검 결과 도출된 문제점에 대한 개선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23조(보안감사) ① 군수는 정기보안감사에 공간정보 보안업무를 포함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② 보안감사반은 업무의 특성을 고려하여 공간정보 보안담당관 등 공간 정보 및 전산보안 분야 관계자를 포함하여 편성하고, 필요한 경우 국가정보원장에게 공간정보 보안전문요원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③ 보안 감사 시 확인된 문제점에 대한 개선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군수는 이를 확인 할 수 있다.

제24조(보안교육) ① 보안담당관은 공간정보업무 취급자를 대상으로 연 한 번 이상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안교육 실시 이후 인사발령 등의 사유로 보안교육이 필요한 자에 대한 교육은 자체 보안담당관 주관 하에 실시한다.

제25조(보안사고에 대한 조치)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보안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사고일시·장소·내용 및 사고 유발자 인적사항, 조치내용 등을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비공개 및 제35조 제1항에 따른 공개가 제한되는 공간정보의 누설·유출·침해·훼손·분실

2. 법 제37조의 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의 침해·훼손·무단 이용

3. 법 제38조의 비밀의 누설·도용

4. 공간정보유통망 또는 보안구역에 대한 불법 침입

5. 그 밖의 공간정보에 대한 중대한 침해 행위

- ② 관리부서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보안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③ 관리부서의 장은 필요한 자료의 제공 등 보안조사에 성실히 협조하고 이에 대한 조사가 종결될 때까지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④ 군수는 보안사고 조사결과에 따라 보안사고 관련자에 대하여 관련법에 따른 조치 및 사고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그 결과를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장 보칙

제26조(준용)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다음의 관련 규정 및 지침에 따른다.

1.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 기본지침」
2.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3. 「보안업무규정」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
4. 연도별 보안업무 수행 지침
5. 그 밖의 공간정보 보안업무 관련 법령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이전에 종전의 규정 및 지침에 따라 처리된 사항은 이 규정에 따라 처리한 것으로 본다.

[별표 1]

공간정보 세부분류기준(제9조제1항 관련)

공간정보	등 급	분류기준
항공사진	비공개	○일반인 출입이 통제되는 국가보안시설 및 군사시설(휴전선 접경지역내 시설 포함)이 노출된 사진 및 영상, 3차원 입체자료
	공 개 제 한	○일반인 출입이 통제되는 국가보안시설 및 군사시설(휴전선 접경지역내 시설 포함)이 삭제된 흔적이 남아있는 사진 및 영상, 3차원 입체자료 ○2차원좌표(經·緯度)가 포함된 해상도 30미터보다 정밀한 자료 ○3차원좌표(經·緯·高度)가 포함된 해상도 90미터보다 정밀한 자료
	공 개	○“비공개” 및 “공개제한” 대상 이외의 항공사진 및 영상, 3차원 입체자료 (인터넷·내비게이션·휴대폰에는 좌표 표시 불가) ○ 해상도 25센티미터보다 정밀한 항공사진은 건물·토지의 소유자와 법 제2조 제4항의 관리기관 및 관리기관의 장이 승인한 경우에 한하여 제공 또는 판매하고, 인적사항 및 사진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다만, 올림픽 등 국제행사 지역은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행사기간 동안 해상도 25센티미터보다 정밀한 항공사진을 일반인에게 제공 또는 판매할 경우 기록을 생략할 수 있다
위성영상	비공개	○일반인 출입이 통제되는 국가보안시설 및 군사시설(휴전선 접경지역내 시설 포함)이 노출된 3차원 위성자료
	공 개 제 한	○정밀 보정된 2차원좌표가 포함된 해상도 30미터보다 정밀한 자료 ○일반인 출입이 통제되는 국가보안시설과 군사시설(휴전선 접경지역내 시설 포함)이 노출된 해상도 4미터 보다 정밀한 자료 ○3차원좌표가 포함된 해상도 90미터 보다 정밀한 자료
	공 개	○“비공개” 및 “공개제한” 대상 이외의 위성영상 및 3차원 위성자료 ○촬영 당시 위성자세정보가 포함된 국가보안시설 및 군사시설(휴전선 접 경지역내 시설 포함) 이외 지역의 자료(인터넷·내비게이션·휴대폰에는 좌표 표시 불가) 다만, 해상도 25센티미터보다 정밀한 위성영상 제공 또는 판매 시 인적 사항 및 사진내용 기록유지
전자지도	비공개	○축척에 관계없이 일반인의 출입이 통제되는 국가보안시설 및 군사시설 (휴전선 접경지역내 시설 포함)이 포함된 지도
	공 개 제 한	○군사지도 ○전력·통신·가스 등 공공의 이익 및 안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국가

		<p>기간시설이 포함된 지도</p> <p>다만, 항공기·선박의 안전항행 등에 필요한 전력·통신·가스 등 국가기간 시설은 보안성 검토를 거쳐 지도에 표기</p> <p>○1:1,000 축척 이상 지도의 등고선과 표고점</p>
	공 개	<p>○“비공개” 및 “공개제한” 대상 이외의 지도</p> <p>○인터넷·내비게이션·휴대폰 등을 통해 좌표와 1:5,000 축척 이상 지도의 등고선·표고값 표시 불가</p>
해양공간 정보	비공개	<p>○접경해역 수심 자료</p> <p>○좌표가 표기되어 있고 국가보안시설 및 군사시설 인근해역 또는 접경해역내 해상도 30미터보다 정밀한 해저 영상자료</p>
	공개 제한	<p>○좌표가 포함된 해상도 120미터보다 정밀한 수심 자료</p> <p>다만, 공개제한 대상 수심이라도 항해안전, 해양레저, 해양공간정보 산업화 등에 필수적인 해역의 수심은 관계기관 협의 후 공개</p> <p>○좌표가 포함된 해상도 90미터보다 정밀한 해저 영상자료</p>
	공개	<p>○“비공개” 및 “공개제한” 대상 이외의 수심</p> <p>○“비공개” 및 “공개제한” 대상 이외의 해저 영상자료</p> <p>○해도, 전자해도 등</p>
기 타 공간정보	비공개	<p>○일반인의 출입이 통제되는 국가보안시설 및 군사시설(휴전선 접경지역내 시설 포함)이 노출된 3차원 공간정보</p> <p>- 국가보안목표시설로 지정된 정수장이 표시된 상하수시스템, 도로명 주소 기본도</p> <p>○일반인의 출입이 통제되는 국가보안시설 및 군사시설(휴전선 접경지역내 시설 포함)의 명칭 및 속성자료</p>
	공개 제한	<p>○공공의 이익 및 안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국가기간시설의 명칭 및 속성자료</p> <p>○해상도가 90미터보다 정밀하고 3차원 좌표가 포함된 3차원 공간정보</p> <p>다만, 해상도 90미터보다 정밀하고 3차원 좌표가 포함된 공간정보 중 도로 지역은 보안성 검토를 거쳐 국가안보상 위해 요인이 없는 경우 공개</p>
	공개	<p>○좌표가 없는 일반지역 3차원 영상자료</p> <p>○3차원 좌표가 있고 해상도가 90미터보다 낮은 입체영상자료</p> <p>- 토양·지질·지번도, 도시·도로 건설계획도 등</p> <p>○도로명사업에 의하여 작성된 자료 중 보안관리 대상 시설을 제외한 도로명 주소 안내도</p>

국가보안목표시설과 군사시설은 각각 국가정보원과 국방부가 정하는 바에 따름

[별표 2] 안전반출 및 파기계획(제18조제1항 관련)

안전반출 및 파기계획

1. 목 적

이 계획은 전시사변, 폭동, 천재지변, 화재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에 있어서 군이 보관·관리 및 활용하고 있는 공개제한 및 비공개 공간정보 (이하 “공간정보”라 한다)를 안전하게 반출 또는 파기함으로써 공개제한 및 비공개 공간정보 자료의 안전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거창군이 생산·관리 및 활용하고 있는 공간정보

3. 반출 또는 파기의 시기

- 가. 전쟁, 사변 또는 폭동의 발발로 인하여 공간정보 등을 현 보관 장소에 안전하게 보관할 수 없게 된 경우
- 나. 천재지변, 화재 등으로 공간정보 등이 누설, 전파, 분실, 도난, 손실 또는 파괴될 우려가 있을 때
- 다. 적, 무장공비, 폭도 그 밖에 불순분자의 포위공격 또는 침투로 공간정보 등을 탈취당할 우려가 있을 때
- 라. 그 밖에 현 보관 장소에 계속 보관할 수 없는 불가피한 또는 긴박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4. 반출 또는 파기의 절차 및 장소 등

가. 일과 중일 때의 반출절차

1) 상황파악 및 반출명령

보안담당관은 제3항의 상황에 따른 반출시기임이 파악되었을 때에는 즉시 군수의 반출명령을 받아 보관책임자에게 공개제한 및 비공개 공간정보에 대한 반출을 명한다.

2) 보관책임자의 반출조치

가) 공간정보 등 반출요원 소집 및 반출지시

반출요원은 보관 부책임자 및 그 소속직원이 된다.

나) 공간정보 등의 보관용기 개방과 인출작업

반출요원은 보관용기를 개방하여 공간정보 등을 인출한 후 이를 비상 반출함에 넣어 반출준비를 완료한다.

다) 반출

반출요원은 승강기 또는 비상계단을 통하여 공간정보 등을 반출지까지 가장 신속하고도 안전한 방법으로 반출한다.

라) 반출시 호위

반출시 호위는 각 반출요원 또는 지명 받은 보조요원이 행한다.

나. 일과 후 및 공휴일의 반출절차

1) 상황과악 및 반출명령

당직책임자는 제3항에 따른 반출시기임이 파악되었을 때에는 즉각 보안담당관에게 보고한 후 보안담당관의 명에 따라 비밀 등에 대한 반출을 명한다.

2) 비상소집 조치(예비군 포함)

당직책임자는 판단된 상황에 따라 전직원 또는 예비군에 대한 비상소집 조치를 취한다.

3) 반출조치

가) 안전함 개방, 보관용기 열쇠 및 다이얼번호 등 확인

당직책임자는 숙직실에 보관되어 있는 안전함을 열어 각 실·과 보관용기 열쇠 및 다이얼번호를 확인한다.

나) 인출조 편성 및 인출지시

당직책임자는 숙직자(수위 포함)로 구성된 인원으로 각 실·과별로 분담한 인출조를 편성하여 해당되는 열쇠와 다이얼 번호를 인계하여 인출토록 지시한다.

다) 인출조의 인출작업

분담 받은 해당 실·과의 공간정보 등 보관용기를 개방하여 공간정보 등을 인출한 후 이를 비상 반출낭에 넣어 반출준비를 완료한다.

라) 반출

인출 또는 인출준비 완료와 동시에 비상계단을 통하여 공간정보 등을 반출장소까지 가장 신속하고도 안전한 방법으로 반출한다.

(마) 반출시 호위

반출시의 호위는 우선 확보된 인출조원이 이를 하되 비상소집 되어 도착된 예비군 또는 직원이 이를 호위한다.

다. 반출장소

1) 상황에 따라 보안담당관은 안전지출 장소를 변경할 수 있다.

2) 반출장소는 보안담당관이 이를 작성하여 안전함 내부에 비치한다.

라. 파기절차 및 장소

1) 적, 무장공비, 폭도 기타 불순분자의 포위공격 또는 침투로 인하여 공간정보 등의 안전반출이 도저히 불가능하거나 공간정보 등을 탈취 당할 긴박한 상태가 야기되었을 때는 긴급 파기할 수 있다.

2) 파기절차는 반출절차 4항 가, 나에 준하여 시행하고 파기장소는 원칙적으로 소각장으로 하되 상황의 진척에 따라 보안담당관의 판단에 따라 별도의 장소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한다.

[별지 제6호서식]

공개제한 공간정보 제공 검토서					
신 청 인 (신청기관) 인적사항	성명/기관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			
	소속기관(단체)		직 책		
신청자료					
사용목적 및 활용계획					
관리계획 및 보안대책					
타당성 검토	검 토 자		제공여부	여	부
	검토결과				
승인사항	제공자료				
	제공방법				
	제공기간				
	제공조건				
공간정보 보안담당관 직책			성명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별지 제7호서식]

공개제한 공간정보 인수서						
신 청 인 (신청기관) 신원사항	성명/기관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				
	소속기관(단체)		직책			
신청자료						
사용목적 및 활용계획						
관리대책 및 보안대책						
제 공 내 역	제공자료					
	제공방법					
	제공기간	~	반납여부		반납일	
	보안대책					

본인은 위 공개제한 공간정보를 제공받음에 있어 목적 외에는 사용을 금지하며, 목적 외에 사용 시 다음에 규정된 처벌과 불이익을 감수하겠습니다.

1.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39조, 제40조, 제41조의 처벌
2. 제공된 공개제한 공간정보와 결과물·산출물 등은 제공기관 환수

년 월 일

신청인 또는 신청기관의 장:

(서명 또는 날인)

I. 개정이유

- 국가정보원의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 기본지침」 개정내용을 반영한 행정안전부 「공간정보 보안관리 규정」(훈령 제16호, 2017.12.4.)이 개정됨에 따라
- 본 지침 및 규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거창군 공간정보 보안관리 규정」을 개정하여 공간정보 보안업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II. 관계 법령

- 국가정보원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 기본지침」
- 행정안전부 「공간정보 보안관리 규정」

III. 주요 개정 내용

- “보안책임”을 보안책무“로 하여 보안의무 강화
- 공간정보 분임보안담당관을 보안담당관으로 책무 상향
- 공간정보 보안담당관 임무에 “공간정보심의위원회 관리” 조항 신설
- 보안담당관에 대한 임명·교체 내용 상위기관 통보 조항 삭제
- 비공개·공개제한·공개 공간정보 기본 분류기준을 본문에 명시
- 보호구역 내 주요정보 유출 방지를 위해 세부적인 조항 명시
- 공간정보 세부분류기준 변경
 - 항공사진 해상도 완화(50cm → 25cm)
 - 항공기, 선박의 안전운행에 필요한 국가기간시설은 보안성 검토 후 지도 표기

도로명주소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 12. 4.

거창군수

○ 부여한 도로명주소 : 경상남도 거창군 가조면 의상봉길 840 등 7건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고시일	도로명 부여(폐지)사유	비고
(별 도 열 람)				

○ 도로명주소 사용

- 도로명주소는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과 건물번호의 부여·변경·폐지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부여·변경·폐지는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8조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따라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 이름,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합니다.
- 고시내용과 기타 사항은 거창군청 민원소통과(☎055-940-3312)에 문의하시거나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부여

일련 번호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고 시 일		도로명부여사유	비고
			도로명	도로명주소		
1	경상남도 거창군 남상면 월평리 946-10	경상남도 거창군 남상면 밤티재로 1288-16	2009-12-28	2019-12-04	밤티재라는 지명이 반영된 도로	
2	경상남도 거창군 웅양면 군암리 산134	경상남도 거창군 웅양면 웅양로 2146-56	2009-12-28	2019-12-04	행정구역 웅양을 이용하여 웅양로로 명명	
3	경상남도 거창군 남상면 전척리 690-1	경상남도 거창군 남상면 고척길 386-20	2009-04-01	2019-12-04	마을 근처에 금상옥척이라는 명당자리가 있다가 붙여진 자연마을 이름 반영	
4	경상남도 거창군 위천면 상천리 972-2, 971-4	경상남도 거창군 위천면 금원산길 240	2009-04-01	2019-12-04	금원산으로 가는 도로라하여 붙여진 이름	
5	경상남도 거창군 가조면 동례리 609-2	경상남도 거창군 가조면 동례길 389	2009-04-01	2019-12-04	박유산의 동쪽마을이라 하여 붙여진 자연마을 이름 반영	
6	경상남도 거창군 북상면 월성리 산158	경상남도 거창군 북상면 월성중앙길 180	2009-04-01	2019-12-04	달이 마을 앞 성삼봉에 비친다하여 월성이라 붙여진 옛지명이 반영된 도로	
7	경상남도 거창군 가조면 수월리 25, 1-3, 1-4	경상남도 거창군 가조면 의상봉길 840	2009-04-01	2019-12-04	의상봉으로 가는 길임을 반영한 도로	

●거창군 공고 제2019 - 1488호

**거창군 계획시설(교통시설:소로3-47호선) 사업 실시계획 인가 및 사업인정에 대한
주민의견 청취를 위한 열람공고**

경상남도 고시 제465호('92.12.24.)로 최초 결정된 군계획시설(교통시설: 소로3-47호선)의 사업시행을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 제1항,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이해관계인은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2019년 12월 5일

거창군수

1. 사업개요

종류	시설명	위치		시행규모						시행위치		최초 결정일	비고
		읍	리	등급	류별	번호	연장	폭	면적	시점	종점		
군 계획 시설	도시계획도로 (소로3-47호선)	거창	가지	소로	3	47	147.5	6.0	1,077	거창읍 가지리 675-1	거창읍 가지리 652-1	경고465호 ('92.12.24)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명 칭 : 거창군수(도시건축과장)

주 소 :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3

사업명 : **가조 마상지구 주자창 및 도시계획도로(소로2-196호선) 개설공사**

3. 열람기간: 신문개제 익일로부터 14일간

4. 사업의 착공일 및 준공예정일

착 수 일 : 실시계획인가일

준공예정일 : 2021. 12. 31.

5. 수용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물건 및 권리에 관한 명세

○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붙임)

일련 번호	소재지	지 번	지목	지적 면적 (㎡)	편입 면적 (㎡)	소 유 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비고
						주 소	성명	권리명	권리자	
합계	거창읍			8,344	1,077					
1	가지리	675 - 1	전	60	4		조석봉			
2	가지리	667 - 1	답	117	37		경상남도			
3	가지리	667	답	800	108	경남 거창군 거창읍 거열로8길 57, 104동 1304호(현대아파트)	황광도			
4	가지리	667 - 2	답	830	48	경남 거창군 거창읍 송정2길 33, 105동 503호(푸르지오아파트)	류청렬			
5	가지리	666	답	2,069	350	경남 거창군 거창읍 거열로5길 16-4	조옥현			

6	가지리	1714	- 2	도	1,305	274		국 (국토교통부)			
7	가지리	648	- 2	답	1,353	59	경남 거창군 거창읍 강양5길 61-3, 301호(유빌리지3차)	신용회			
8	가지리	650	- 1	답	85	42	경남 거창군 거창읍 중촌2길 7	양말용			
9	가지리	650	- 2	도	150	43		거창군			
10	가지리	651		답	169	90	경남 거창군 거창읍 강양5길 61-3, 301호(유빌리지3차)	신용회			
11	가지리	1714	- 5	도	11	11		국 (국토교통부)			
12	가지리	652	- 1	도	929	8		거창군			
13	가지리	672		대	466	3	경남 거창군 거창읍 수남로 2270-36	박문자 외1인			

※ 관계도면은 거창군청 도시건축과에 비치하고 있으니 이해관계인은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6. 의견제출 및 열람

위 공람 기간 내 다음 항목을 기술한 의견을 거창군수(참조: 도시건축과장)에게 서면[우편주소: 50132 / 경남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3]이나 전화(055-940-3595), FAX(055-940-3579), Email : kmj123494@korea.kr 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실시계획(안)에 대한 의견 및 그 사유
- 성 명:
- 연락처:
- 기타 참고사항: “끝”.

공 시 송 달 공 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제6항에 의거 「고척지구」 지적재조사 경계결정 통지서를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통보하려 하였으나, 주소불명 및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 12명(붙임참조)
2. 공고기간 : 2019. 12. 3. ~ 2019. 12. 17.(14일간)
3. 공고장소 :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4. 기타사항
 - 가. 공고기간 만료 시 「행정절차법」 제15조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함을 알려드립니다.
 - 나. 기타 문의사항은 거창군청 민원소통과 지적재조사담당(☎055-940-3322)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공시송달 내역 1부. 끝.

2019. 12. 3.

거 창 군 수

별도붙임 공시송달 내역 1부. 끝.

●거창군 공고 제2019 - 1504호

**거창군 계획시설(교통시설:소로2-196호선,주차장4호) 사업인정에 대한 주민의견
청취를 위한 열람공고**

경상남도 고시 제103호('95.5.12)로 최초 결정된 군계획시설(교통시설: 소로2-291호선 , 주차장4호)의 사업시행을 위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이해관계인은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2019년 12월 4일
거창군수**

1. 사업개요

종류	시설명	위치		시행규모						시행위치		최초 결정일	비고
		읍	리	등급	류별	번호	연장	폭	면적	시점	종점		
군 계획 시설	교통시설 (주차장 4호)	가조	마상			4	57	26	2,050	가조면 수월리 446-3	가조면 수월리 449-8	경고103 호 (‘95.5.12)	
	도시계획도로 (소로2-196호선)	가조	마상	소로	2	196	88.5	8	750	가조면 수월리 449-8	가조면 마상리 9	경고103 호 (‘95.5.12)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명 칭 : 거창군수(도시건축과장)

주 소 :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3

사업명 : 가조 마상지구 주차장 및 도시계획도로(소로2-196호선) 개설공사

3. 열람기간: 신문게재 익일로부터 14일간

4. 사업의 착공일 및 준공예정일

착 수 일 : 실시계획인가일

준공예정일 : 2020. 12. 31.

5. 수용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물건 및 권리에 관한 명세

○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붙임)

일련 번호	소재지	지 번	지목	지적 면적 (㎡)	편입 면적 (㎡)	소 유 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비고
						주 소	성명	권리명	권리자	
합계	가조면			7,231	2,800					
1	수월리	446 - 8	답	735	17		거창군			
2	수월리	446 - 7	답	552	8		거창군			
3	수월리	446 - 2	답	690	383		유영숙			
4	수월리	446 - 3	답	907	896		거창군			

5	수월리	449 - 8	답	1,311	1,038	거창군 가조면 마상리 425	정극진			
6	마상리	861 - 28	도	1,039	30		국 (국토교통부)			
7	마상리	9	답	1,997	428		김옥이 등 4명			

※ 관계도면은 거창군청 도시건축과에 비치하고 있으니 이해관계인은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6. 의견제출 및 열람

위 공람 기간 내 다음 항목을 기술한 의견을 거창군수(참조: 도시건축과장)에게 서면[우편주소: 50132 / 경남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3]이나 전화(055-940-3592, 3595), FAX(055-940-3579)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실시계획(안)에 대한 의견 및 그 사유
- 성 명:
- 연락처:
- 기타 참고사항: “끝”.

거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거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 및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거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2월 4일

거 창 군 수

1. 자치법규명 : 「거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2. 개정이유

- 「거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가 전부 개정됨에 따라 기업 투자촉진지구 지원대상 구체화 등 개정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규칙 체계 변경 : 제23조 ⇒ 제5장 제31조
- 대규모 연구소 특별지원 (안 제12조)
 - 100억원 이상 100명 이상 투자기업 100억원 이내 지원(도비포함)
- 관내기업 지원 (안 제17조)
 - 투자금액 5%이내 1억원 이내 및 승강기업체 외에도 승강기업체에 지원되는 사항 지원 기준 규정

-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입지 지원 (안 제20조)
 - 부지 분양가의 50%이내 (도비 포함)

4. 전부개정규칙안 : 붙임

5. 입법예고 기간 : 2019. 12. 04. ~ 2019. 12. 24.(20일간)

6. 의견제출

- 이 규칙의 전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2월 24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거창군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등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직접 방문 등

- 주 소 : (우50132) 경남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3, 미래전략과
- 전화번호 : 055)940-3822
- FAX : 055)940-3679

거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거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거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거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투자금액”이란 부지 매입비 또는 임차료와 설비투자금액을 말한다.
2. “설비투자금액”이란 별표1에 따른 건설투자비용, 기계장비구입비용, 근로환경개선시설투자 비용을 말한다.
3. “투자계획”이란 투자기업이 보조금 또는 융자금 신청을 위하여 제출하는 사업계획서상의 투자금액과 상시고용인원에 대한 계획을 말한다.
4. “상시고용인원”이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근로자 중 1년 미만의 기간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및 「근로기준법」제2조에 따른 단시간 근로자는 제외하고 해당 기업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원으로서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0조에 따른 근로자파견계약서 등 객관적인 증명자료에 따라 확인 가능한 파견근로자의 수를 포함한다.
 - 가. 「소득세법 시행령」제185조제1항에 따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한 소득세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기재된 근로소득자의 최근 1년간 평균인원(다만, 제7조의 입지보조금을 준비만 지원할 경우에는 최근 3개월간 평균인원) (단서신설 2018.10.02.)
 - 나. 「국민연금법」제3조제1항11호 및 제12호에 따른 부담금 및 기여금(같은 법 제9조에 따른 지역가입자 제외)의 납부가 증명된 사람의 최근 1년간 평균인원(다만, 제7조의 입지보조금을 준비만 지원할 경우에는 최근 3개월간 평균인원)
 - 다. 「국민건강보험법」제69조에 따른 보험료(같은 법 제6조에 따른 가입자 제외)의 납부가 증명된 사람의 최근 1년간 평균 인원(다만, 제7조의 입지보조금을 준비만 지원할 경우에는 최근 3개월간 평균인원)
5. “연구개발업”이란 통계청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상의 중분류로 연구개발업인 업종을 말한다.
6. “ICT 기업”이란 한국표준산업분류 상의 소분류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과 컴

퓨터 프로그래밍(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포함), 시스템통합 및 관리업을 주로 영위하는 기업을 말한다.

7. “사회적기업”이란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8.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이란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산업부 고시)」을 말한다.

9. “사후관리기간”이란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지원받은 기업에게 보조금 및 융자금 정산을 통보한 날부터 5년까지를 말한다.

제2장 기업투자에 대한 지원

제3조(기업투자촉진지구 지원대상) ① 「거창군 기업 및 투자촉진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기업투자촉진지구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기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경상남도(이하 “도”라 한다)외 소재 기업이 사업장을 거창군내(이하 “관내”라 한다)로 이전하는 경우

2. 기업이 사업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하는 경우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기업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할 경우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기업투자촉진지구 안에 부지매입 또는 임차계약을 체결할 기업일 것

2. 투자금액이 20억원 이상일 것. 다만, 연구소·ICT기업·사회적기업·연구개발업을 주로 영위하는 기업은 10억원 이상일 것

3. 신규로 채용하는 상시고용인원(기업이 도외에 소재한 사업장을 도내로 이전하는 경우 기존 고용인원을 포함)이 10명 이상일 것

4. 기업이 도내의 사업장을 도내로 이전하는 경우가 아닐 것. 다만, 도내의 다른 시군에서 관내로 이전하여 기존의 사업장과 비교해 자산가치 및 고용인원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그 증가하는 부분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음

③ 제2항 및 제3항에 해당되는 기업이 우리군에 투자할 경우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사업(투자)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입지보조금) ① 군수는 제3조에 따라 지원 대상이 되는 기업이 부지를 매입할 경우 부지 매입비의 50퍼센트 범위에서 기업당 5억원(도비 포함)의 한도로 지원할 수 있으며, 제조업의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공장 면적률에 따른 공장 입지 기준면적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기업은 투자계획을 완료한 후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고용보조금) ① 군수는 제3조에 따라 지원대상이 되는 기업이 고용창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상시고용인원을 고용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고용보조금(도비 포함)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은 새로이 사업장을 설치하는 경우로서 기업이 10명 초과 상시고용인원 1명당 월 100만원씩, 12개월 범위에서 3억원의 한도로 지원할 수 있다.

③ 고용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기업은 투자계획을 완료한 후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기한은 사업개일로부터 5년 이내로 한다.

제6조(교육훈련보조금) ① 군수는 제3조에 따라 지원대상이 되는 기업이 상시근로자의 교육훈련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도비 포함)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은 내국인을 10명 이상 신규로 고용한 후 교육훈련을 실시한 경우에 10명을 초과한 인원 1명당 월 100만원씩 12개월의 범위에서 기업당 2억원의 한도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은 「근로자 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에 따라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가 설치·운영하는 공공직업훈련시설,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이 설치·운영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기관, 외국인 투자기업이 모기업에의 파견교육, 그 밖에 군수가 인정하는 기관에서 실시하는 경우를 말한다.

④ 교육훈련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기업은 교육훈련을 실시한 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기한은 사업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로 한다.

제7조(설비보조금) ① 군수는 제3조에 따라 지원 대상이 되는 기업이 사업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설비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보조금은 20억원(연구소·ICT기업·사회적기업, 연구개발업을 주로 영위하는 기업은 10억원)을 초과하는 설비투자금액의 2퍼센트 범위에서 기업당 2억원까지(도비 포함)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설비투자금액은 사업개시일로부터 최장 3년 이내 투자하는 설비투자금액을 말한다.

③ 설비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기업은 사업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 별지 제1호_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이전보조금) ① 군수는 도외에 소재하는 사업장을 기업투자촉진지구로 이전하

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이전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조례 제13조에 따라 기업투자촉진지구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5억원을 초과하여 이전하는 설비가액의 3퍼센트 범위에서 기업당 2억원까지 (도비 포함)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설비가액은 별표 1에 따른 설비 투자금액으로 인정되는 기계장비의 보조금 신청일 기준 최종 기업회계기준상의 유형자산을 말한다.

④ 제2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기업은 사업개시일부터 1년 6개월 이내에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본점 이전보조금) ① 군수는 도외에 소재하는 기업의 본점을 관내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이전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조례 제14조에 따라 본점을 관내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본점에 근무하는 10명을 초과하는 인원에 대하여 초과인원 1명당 30만원을 기업당 2억원까지(도비 포함)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하는 기업은 본점 이전일부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도외 기업의 관내 이전 지원) ① 군수는 조례 제14조에 따라 도외에 소재한 기업이 본점, 공장, 연구소 중 독립된 사업장을 관내로 이전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하는 경우 기업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광역협력권산업, 주력산업, 지역집중유치업종, 국가혁신융복합단지대표산업, 첨단업종, 연구개발업, 정보통신업 중 어느 하나를 영위할 것
2. 국내에서 연속으로 2년 이상 사업을 영위할 것
3. 투자금액이 50억원 이상이고 상시고용인원이 20명 이상일 것. 다만, 연구소, ICT 기업, 연구개발업을 주로 영위하는 기업의 경우 투자금액이 10억원 이상이고 상시고용인원이 10명 이상일 것
4. 기존사업장은 투자계획을 완료하기 전에 폐쇄 또는 매각하되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사후관리기간 종료 전까지 매각할 것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범위는 설비투자금액의 5퍼센트 이내로 한다. 다만,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등에 투자하는 기업이나, 국가혁신융복합단지에 투자하고 국가혁신융복합단지대표산업을 주로 영위하는 기업에는 지원비율을 각각 1퍼센트씩 추가로 지원하며, 이전 후 신규로 고용한 인원에 따라 별표 2에 따른 범위에서 최대 5퍼센트까지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보조금은 기업당 10억원(도비포함)을 초과하여 지원할 수 없다.

④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기업은 투자계획을 완료한 후 6개월 이내에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① 군수는 조례 제15조에 따라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보조금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으로 한다.

1. 「국가의 재정자금지원기준」 제17조제2항에 따른 타당성 평가 점수가 같은 지원 기준 제17조제3항에 따른 보조금 신청요건에 해당할 것
 2. 투자계획 완료 기한은 착공신고일로부터 3년 이내일 것
- ② 보조금의 지원 범위는 설비투자금액의 10퍼센트 이내로 하며, 100억원(도비 포함)을 초과할 수 없다.
- ③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기업은 부지매입 또는 임차 계약일로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대규모 연구소 특별지원) ① 군수는 조례 제15조에 따른 대규모 투자기업 중 연구소의 경우에는 제11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기업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투자금액이 500억원 이상이고 신규로 고용하는 상시고용인원이 100명 이상일 것 (기업이 도외에 소재한 사업장을 도내로 이전하는 경우 기존 고용인원을 포함한다)
 2. 「국가의 재정자금지원 기준」 제17조제2항에 따른 타당성 평가 점수가 같은 지원 기준 제17조제3항에 따른 보조금 신청요건에 해당할 것
 3. 투자계획 완료 기한은 착공신고일로부터 3년 이내일 것
-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범위는 다음 각 호로 하며 총 지원액이 100억원(도비 포함)을 초과할 수 없다.
1. 입지보조금 : 부지매입비의 30퍼센트 이내
 2. 정착지원금 : 상시고용인원에 대하여 1명당 월 1백만원씩 3년의 범위 이내
- ③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기업은 부지 매입 또는 임차 계약일로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중규모 투자기업 특별지원) ① 군수는 조례 제17조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에게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관내 입주하는 기업의 설비투자금액이 100억원 이상이고 기존사업장 상시고용인원이 40명(창업기업의 경우 투자완료일 이전 1년간 평균 상시고용인원으로 산정하여 20명)이상 일 것
2. 투자사업장의 신규 상시고용인원이 20명 이상일 것. 다만, 도외기업 및 도내 다른 시군에 소재한 기업이 사업장을 관내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함
3. 투자계획 완료기한이 착공일로부터 3년 이내일 것

② 제1항에 따른 투자기업의 지원범위는 설비투자금액의 15퍼센트 이내로 한다. 다만, 신규로 고용한 인원에 따라 별표 2의 범위에서 최대 5퍼센트까지 추가로 지원할 수 있으며, 신규고용인원의 산출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기업이 사업장을 관내로 이전하는 경우, 기존 사업장의 고용인원을 유지하고 신규로 고용한 인원으로 산정
2. 기업이 관내에 사업장을 신·증설하는 경우, 기존 사업장의 고용인원을 유지하고 신규로 고용한 인원으로 산정
3. 기업이 관내에서 창업한 경우 전체 상시고용인원에서 20명을 차감한 인원으로 산정

③ 제2항에 따른 보조금은 기업당 50억원을 초과하여 지원할 수 없다.

④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기업은 투자계획을 완료한 후 6개월 이내에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경남 서북부권역 등 균형발전 대상지역 지원) ① 군수는 「경상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제8조에 따라 도지사가 지원을 결정한 기업에 대하여 투자기업의 고용 등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를 고려하여 필요할 경우 보조금 등의 지원 규모를 2배의 범위에서 확대지원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등의 차등지원 금액, 업종 등은 조례 제3조에 따른 투자유치 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정한다.

제15조(관광사업 기반시설 지원) ① 조례 제19조제1항에 따른 관광사업 기반시설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며, 「관광진흥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일 또는 등록일 등(사업계획승인·등록 등이 불필요한 사업의 경우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일)으로부터 3년 이내 한차례만 별지 제6호서식의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군수와 협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를 추진한 경우
 - 가. 관광시설 사업자가 사업 부지의 확보를 완료한 경우
 - 나. 군수가 관광시설 민자유치를 위하여 개별법에 근거하여 협의 매수 또는 토지 수용으로 사업부지내 사유지를 확보한 경우
2. 군수가 권장하는 사업으로 군과 투자협약을 체결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관광사업 기반시설 보조금은 별표 5의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기존 사업장의 부지 및 건축물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16조(개별입주 기업에 대한 지원) 군수는 조례 제20조에 따른 투자기업이 제3조 제1항제1호 및 제2호, 제2항제2호부터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4조부터 제8조까지

를 준용한다.

제17조(관내기업 지원) ① 조례 제22조에 따라 증설투자비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해야 한다.

1. 관내에서 공장을 3년 이상 가동 중이고 상시고용인원 10명 이상인 기업
 2.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로서 다른 토지를 매입하여 건축하거나 기존 공장부지에 건축하고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3.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투자금액이 5억원 이상일 경우
-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범위는 투자금액의 5퍼센트 범위에서 기업당 1억원까지 보조할 수 있다.
- ③ 증설투자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토지, 건물 등을 분양, 매입 또는 임대하기 위한 투자 계약체결일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④ 그 밖에 승강기외 관내 기업이 「거창군 승강기밸리 조성 및 지원조례」에 준하여 지원을 요구할 경우에는 예산이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8조(농공단지입주기업에 대한 분양가격 감면) ① 조례 제23조에 따라 대체입주기업에 대하여 감면할 수 있는 분양가격은 금융비용의 50퍼센트까지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금융비용이 최초 분양가의 20퍼센트를 초과하거나, 입지여건이 불리한 부지는 추가로 감면할 수 있다.

제3장 외국인 투자에 대한 지원

제19조(외국인투자의 지원 대상) ① 조례 제27조에 따른 보조금 지원대상이 되는 외국인 투자의 요건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1. 외국인 투자금액이 미화 100만달러 이상인 경우로서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 2 제1항제1호에서 정한 신성장동력산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새로이 사업장 시설을 신설 또는 증설하면서 상시고용인원이 30명 이상인 경우
2. 외국인 투자금액이 미화 500만달러 이상인 경우로서 기계, 자동차, 항공우주, 조선, 생명공학산업 등 지역특화산업 육성을 위하여 군수는 따로 정하는 산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새로이 사업장 시설을 신설 또는 증설하면서 상시고용인원이 50명이상인 경우
3. 외국인 투자금액이 미화 1천만달러 이상인 경우로서 제1호 및 제2호에서 정한 사업외의 제조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공장시설을 신설 또는 증설하면서 상시고용인원이 50명이상인 경우
4. 외국인 투자금액이 미화 2천만달러 이상인 경우로서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25조제1항제2호의 각 목에서 규정한 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시설

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경우

5.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천만달러 이상인 경우로서 영 제25조제1항제3호 각 목에서 규정한 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시설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경우

6.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200만달러 이상인 경우로서 영 제25조제1항제4호에서 규정한 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시설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경우

②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총 지원금액은 해당 외국인 투자기업의 외국인 투자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제20조(입지지원) ① 군수는 제19조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의 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토지를 매입하여 임대하거나 시설용지를 저가에 공급하기 위하여 분양가의 차액을 보조(도비 포함)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하는 분양가의 차액 보조금은 정상적인 분양가(조성원가 및 거래실례 가격 등을 감안하여 산정한 가격을 말한다. 이하 같다)와 분양계약서 등에 따른 분양가의 차액에서만 지원하되 정상적인 분양가의 50%를 초과하여 지원할 수 없다.

③ 입지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보조금 신청 시 제출한 사업계획서상의 사업을 군수가 기업에게 보조금 정산을 통보한 날부터 5년 이상 경영하여야 한다.

④ 분양가의 차액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기업은 투자계획을 완료한 후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기한은 사업개일로부터 5년 이내로 한다.

제21조(외국인 투자지원 기준 준용) 제20조에 따른 지원대상에게 고용보조금, 교육훈련보조금 및 설비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각 보조금의 지원에 대해서는 제5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2조(보조금 중복지원의 금지)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4조의2에 따라 외국인투자에 대하여 현금을 지원하는 경우에 이 규칙에 규정된 보조금은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제4장 투자유치진흥기금의 지원 등

제23조(기금의 지원) ① 군수는 조례 제11조에 따라 투자기업에 대한 보조금 및 융자금을 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의 지원대상은 우리군과 투자유치 협약을 체결한 기업으로 하며, 협약을 체결하기 전에 도와 서면으로 협의하여야 한다.

제24조(기금용자 절차 등) ① 조례 제11조제2항제3호에 따른 기금의 용자 대상 및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용자대상은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에 따른 창업기업, 도외 사업장의 도내 이전, 도내에 사업장을 새로이 설치하는 경우로 한다. 이 경우, 기업이 도내의 사업장을 관내로 이전하여 기존 사업장과 비교하여 자산가치 및 고용인원이 증가하여 이전하는 경우에는 그 증가하는 부분에 대해 지원할 수 있음
2. 용자대상 업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제조업, 정보통신업과 「산업발전법 시행령」 별표2에 따른 지식서비스산업,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일반물류터미널업, 물류창고업과 군수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일 것
3. 용자대상의 투자금액이 80억원 이상이면서, 상시고용인원이 40명 이상일 것
4. 용자 한도액은 부지매입비의 40퍼센트 이내로 하며(50억원 이내)용자의 이자는 무이자로 함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장 부지 매입을 위해 기금을 용자받고자 하는 기업은 부지매매 계약일로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의 용자금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는 별표 4에 따라 타당성 평가를 실시하여 총점이 50점 이상이고 재무건전성(평균 매출액, 상시고용인원, 기업신용등급, 이자보상배율을 일컫는다) 평가점수의 합이 35점 이상인 경우에 지원가능하다.

④ 용자금을 지원받은 기업은 투자계획을 사업개시일로부터 3년 이내에 달성하여야 한다.

제25조(용자금의 상환) ① 용자금의 원금은 5년거치 후 3년간 동일하게 나누어 상환한다.

② 조례 제35조제1항에 따라 용자금의 조기상환 명령에 따라 상환하는 경우에는 상환 원금에 조기상환 사유 발생일로부터 취급금융기관의 같은 조건의 기업 대출 평균 금리를 적용하여 이자를 부과하여야 하며, 조기상환 기한은 고지일로부터 1개월 이내로 한다.

③ 조례 제35조제1항제2호, 제4호, 제5호, 제6호, 제8호의 경우 조기상환 사유 발생일은 용자금 지원일로 한다.

④ 상환기한을 경과하여 상환하는 자금은 취급금융기관이 일반적으로 적용하는 기업대출 상환연체율을 적용한 연체이자를 더한다.

제5장 보조금의 지원절차 등

제26조(보조금 지원 결정) ① 군수는 보조금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사업계획, 지원계획, 지원대상의 적격여부를 검토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공무원은 현지실사를 할 수 있다.

② 보조금 환수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저당권설정, 가등기, 보증보험증권 등 이행담보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7조(보조금의 정산) ① 조례 및 규칙의 규정에 따라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지원받은 기업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정산신청서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투자이행확약서를 투자계획을 완료한 후 2개월 이내(다년도 사업의 경우에는 매 회계연도 종료일 부터 1개월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군수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정산결과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정산서가 제출된 때에는 보조금 또는 융자금 정산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군수는 그 결과를 기업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8조(투자기업의 사후관리) ① 군수는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지원받은 기업의 경영실태 파악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할 수 있다.

1. 사업계획의 추진 상황
2. 지원자금의 적정 사용 여부
3. 지원 등의 취소·반환 사유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4. 그 밖에 보조사업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경영실태 점검결과 지원받은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보조 또는 융자사업의 목적달성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사업계획의 변경, 시정요구, 의무의 이행 등을 명할 수 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기업의 신청에 따라 그 이행 기간을 원래의 요구기간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③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지원받은 기업에 대하여 상·하반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할 수 있다.

1. 교부받은 보조금액 또는 융자금액
2. 지급한 보조금액 또는 융자금액
3. 집행잔액 발생사유 및 조치사항
4. 투자계획 이행사항
5. 미이행 기업에 대한 지연기간, 지연사유, 환수여부 등 조치계획 및 조치사항 등

제29조(지원의 취소 또는 반환 등) ① 조례 제35조제1항제1호 및 제5호에 따른 “정당한 사유”란 천재지변 또는 보조금이나 융자금 지원계획의 변경 등 귀책사유가 보조금이나 융자금을 받은 해당 기업 외에 있는 경우를 말한다.

② 조례 제35조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9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원

받은 보조금을 반환하게 하여야 하며 그 환수 금액 산정은 별표 3를 따른다.

③ 제24조에 따라 융자금을 지원받은 기업이 사후관리기간 동안 정산 시의 상시고용 인원을 유지하지 못하였을 때는 연평균 상시고용 미달률만큼 취급금융기관이 같은 조건 기업대출 평균금리를 적용하여 정산통보일로부터 기산한 이자를 부과하되, 상시고용인원이 미달한 연도의 횟수가 3회 미만이고 사후관리기간의 마지막 연도에 상시고용 인원을 회복한 경우는 이자를 부과하지 않는다.

제30조(투자유치 기여자 보상) ① 군수는 조례 제39조에 따라 포상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내기업 또는 자본의 도내 유치금액이 건당 20억원 이상인 경우
2. 외국기업 또는 해외자본의 유치금액이 건당 2백만달러 이상인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은 실제로 투자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

③ 포상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투자유치기업의 사업개시일부터 2년 이내에 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포상금의 지급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④ 제1항의 기업유치 실적이 있는 5급 이하 공무원에 대해서는 「지방공무원 평정규칙」에 따른 가점을 주거나 희망부서에 우선 배치할 수 있다.

제30조(투자유치자문관) ① 군수는 국내외 투자유치전문가를 거창군 투자유치자문관(이하“자문관”이라 한다)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② 자문관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투자유치관련 자문
2. 투자기업의 발굴
3. 투자유치에 필요한 홍보활동 및 정보의 수집·제공

③ 자문관은 투자유치업무에 풍부한 경험과 지식을 가진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국내외 투자전문기관의 전문가
2. 대학교수
3. 투자유치 관계 기관·단체의 임원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군수는 자문관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공무원 여비 규정」에 준하여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1. 자료수집 활동을 위한 기본적 경비
2. 투자유치 활동을 위한 행사 참가비

3. 그 밖에 투자유치 활동과 관련된 경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추진된 지원사업은 이 규칙에 따라 추진된 것으로 본다.

[별표 1]

설비투자금액의 인정범위

구분	인정범위
건설투자 비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투자사업장의 건설투자비용(설계비, 기반시설설치비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설투자비용은 「한국감정원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감정원이 발행하는 「건물신축단가표」를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 범위 내에서 인정 * 증설인 경우에는 증설부분 건축물만 해당 * 건물(폐건물포함) 매입비용, 폐건물에 속해 있던 기계장비 매입비용 및 철거비용은 불인정
기계장비 구입비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계획서상의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투자사업장에 구축하는 고정형 기계장비 구입비용. 다만, 이동형 기계장비라도 현장평가를 통해 생산에 필수적인 설비라 인정되는 경우는 포함(내용년수 5년 이상, 구입단가 100만원 이상 기계장비만 해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게차, 연구용 기자재, S/W 구입비(상품개발에 필수적인 S/W 및 이의 구동에 필요한 H/W)는 포함(내용년수 5년 이상, 구입단가 100만원 이상만 해당) * 인건비, 원자재, 금형, 공구기구비품, 사무용 기기, 가구 및 집기, 조정 수목, 소모품, 미술품, 장식품, 운영비, 기계장비의 리스 또는 렌탈 비용 등은 불인정
근로환경 개선시설 투자비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숙사, 식당, 휴게실, 목욕실, 세탁장, 의료실, 옥외체육시설, 제조시설의 관리·지원 및 종업원의 복지후생을 위해 필요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시설의 건설투자비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6의2호, 제7호 및 제9호에 의해 지정된 시설(다만, 보육시설은 제외) * 건설투자 및 기계장비구입 비용의 10%범위 내에서 설비투자금액으로 인정

※ 설비투자금액은 전자세금계산서로 증빙해야 함(간이세금계산서는 인정 불가)

신규고용인원에 따른 추가 지원범위

■ 규칙 제10조 (도의 기업 관내 이전 지원)

신규 고용인원수	추가 지원비율
10명 이상 20명 미만	1%p
20명 이상 30명 미만	2%p
30명 이상 40명 미만	3%p
40명 이상 50명 미만	4%p
50명 이상	5%p

■ 규칙 제13조 (중규모 투자기업 특별지원)

신규 고용인원수	추가 지원비율
30명 이상 40명 미만	1%p
40명 이상 50명 미만	2%p
50명 이상 60명 미만	3%p
70명 이상 80명 미만	4%p
80명 이상	5%p

* 신규고용인원 : 투자사업장 상시고용인원 - 기존사업장 상시고용인원

보조금 환수 기준

구 분	산정 방식
전액 환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조금 교부 조건 (교부결정 사항 포함) 및 승인사항을 위반한 경우 (조례 제35조 제1항 제3호, 제4호, 제5호, 제6호, 제9호) ▶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 보조금 수령기업이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수령하였을 경우 (조례 제35조 제1항제2호)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에 따른 경상남도지사의 처분을 위반하는 경우
부분 환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후관리기간 중 투자사업장 상시고용인원이 정산 시 상시고용인원에 미달하는 경우(조례 제33조 제1항제7호) <p>(1) 원칙 : 사후관리기간 종료시점에 사후관리기간 동안 투자기업 고용의 연평균미달률을 계산하여 환수</p> <div style="border: 1px dashed gray; padding: 10px; margin: 10px 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수액 = 보조금 × 연평균미달률 * 연평균미달률 = 정산시 상시고용인원에 미달한 해 미달률의 합 / 5년 * 미달률 = 정산 시 상시고용인원 - 상시고용인원 / 정산 시 상시고용인원 </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만일 사후관리기간 중 투자사업장 상시고용인원이 지원조건 요구 수준*에 미달하는 경우 그 해의 미달률은 100%로 계산</u> * 기업투자촉진지구 보조금 : 10명 대규모투자 특별지원 : 150명 또는 정산 시 상시고용인원 대규모 연구소 특별지원 : 100명 도외 기업의 도내 이전 지원 보조금 : 20명(연구소, ICT 기업, 연구개발업을 주로 영위하는 기업은 10명) 중규모 투자기업 특별지원 : 20명(도외 및 도내 다른 시군에서 이전한 기업은 예외) ※ <u>미달률은 0보다 작을 수 없음</u> <p>(2) 예외(미환수) : ① 정산 시 고용인원에 미달한 해가 3개년 미만이고, 동시에 ②마지막 사업이행기간 해에 정산 시 상시고용인원을 회복한 경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후관리기간 내 휴·폐업(조례 제35조 제1항제1호) <p style="margin-left: 20px;">☞ 사업 불이행 기간에 비례하여 환수</p>

[별표 4]

기금 용자 타당성 평가표

① 최근 1년이상 ~ 3년미만 평균매출액

평균매출액		점 수
일 반	연구소·연구개발업· ICT기업·사회적기업	
100억원 이상	50억원 이상	15
75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	3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12
50억원 이상 75억원 미만	25억원 이상 35억원 미만	9
3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15억원 이상 25억원 미만	6
30억원 미만	15억원 미만	3

* 최근 3년미만 사업실적의 평균매출
(직전1년도매출액 + 직전2년도 매출액) ÷ 2(단, 사업기간이 1년인 기업은 직전1년도 매출액)

② 상시고용인원

상시고용인원		점수
일 반	연구소·연구개발업· ICT기업·사회적기업	
25명 이상	20명 이상	15
20명 이상 25명 미만	15명 이상 20명 미만	12
15명 이상 20명 미만	10명 이상 15명 미만	9
10명 이상 15명 미만	5명 이상 10명 미만	6
5명 이상 10명 미만	5명 미만	3

년·월								평균
상시고용인원								
년·월								
상시고용인원								

③ 기업신용등급

신용등급	점수
BBB- 이상	20
BB- 이상	16
B0 이상	12
CCC- 이상	8
CCC-미만	4

* 용자금 신청시 유효기간 내 공공기관제출용 신용평가등급확인서의 기업 등급

④ 이자보상배율

이자보상배율	점 수
4 이상	20
3 이상 ~ 4 미만	16
2 이상 ~ 3 미만	12
1 이상 ~ 2 미만	8
1 미만	4

* 이자보상배율 = $\frac{\text{기업의 영업 이익액}}{\text{기업의 부채에 대한 이자비용}}$
 ** 최근년도 재무제표(손익계산서)상 영업손익 및 영업외비용의 이자비용

⑤ 신규투자금액

신규투자금액	점수(10점 만점)
설비투자금액	5억원당 1점

※ 연구소·연구개발업·ICT기업·사회적기업은 2억원당 1점

⑥ 투자기간

신청일로부터 투자완료일	점 수
1년 이내	10
1.5년 이내	8
2년 이내	6
2.5년 이내	4
3년 이내	2

⑦ 신규고용에 따른 가점

신규고용	가점(10점 상한)
투자 후 상시고용인원-신청당시 상시고용인원	*2명당 1점

관광사업 기반시설 보조금 지원기준 (제15조 관련)

지원대상	지원기준	지원비율	지원한도 (억원)	비고
관광사업 기반시설 보조금 (도로, 상·하수도, 통신, 전기등)	상시고용인원 30명이상이고 총사업비 300억원이상	총사업비×3%	18	
	상시고용인원 70명이상이고 총사업비 500억원이상	총사업비×3%	30	
	상시고용인원 100명이상이고, 총사업비 700억원이상	총사업비×3%	42	
	상시고용인원 150명이상이고, 총사업비 1,000억원이상	총사업비×3%	60	

주1) 총사업비에는 토지매입비, 용역비, 건축비 등을 전부 포함함.

주2) 관광사업 기반시설 보조금으로 토지매입비, 건축비, 용역비의 집행은 불가함

보조금 (융자금) 신청서 <input type="checkbox"/> 기업투자촉진지구 보조금 <input type="checkbox"/> 부자매입비 융자금 <input type="checkbox"/> 대규모투자 특별지원 보조금 <input type="checkbox"/> 중규모 투자기업 지원 보조금 <input type="checkbox"/> 대규모 연구소 특별지원 보조금 <input type="checkbox"/> 도와기업의 관내이전 지원 보조금				
지원대상 (투자사업자)	기업명	대표자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남/여)			
	법인본사 소재지			전화번호
지원내용	보조금(융자금) 유형		기업의 구분	
	<input type="checkbox"/> 입지보조금 <input type="checkbox"/> 설비보조금 <input type="checkbox"/> 고용보조금 <input type="checkbox"/> 교육훈련보조금 <input type="checkbox"/> 이전보조금 <input type="checkbox"/> 특별지원금 추가지원 <input type="checkbox"/> 본점 이전보조금 <input type="checkbox"/> 임차료지원 보조금 <input type="checkbox"/> 기타()		<input type="checkbox"/> 대기업 <input type="checkbox"/> 중견기업 <input type="checkbox"/> 중소기업 <input type="checkbox"/> 외국인투자기업 <input type="checkbox"/> 창업기업	
투자사업지 유형	입지 유형		입주 유형	
	<input type="checkbox"/> 산업단지 <input type="checkbox"/> 개별입지		<input type="checkbox"/> 매입 <input type="checkbox"/> 임차	
투자사업장 유형	<input type="checkbox"/> 공장 <input type="checkbox"/> 본점 <input type="checkbox"/> 연구소 <input type="checkbox"/> 기타()			
유치 및 투자일정	법인성립일	(최초)공장등록일	MOU 체결일	보조금 접수일(기업→거창군)
	0000.00.00	0000.00.00	0000.00.00	0000.00.00
	토지매입(임차)계약 체결일	착공(예정)일	투자완료(예정)일	총투자기간(3년 이내) (착공~투자완료)
	0000.00.00	0000.00.00	0000.00.00	00년 00개월
사업장의 내용	소재지		부지면적	건축연면적
기존사업장			m ²	m ²
			m ²	m ²
			m ²	m ²
투자사업장			m ²	m ²
업종	업종명		분류번호 (KSIC 5단위)	생산품
기존사업장				
투자사업장				
고용인원	신청시 상시고용인원		신규고용인원	투자사업장 상시고용인원
	명 (남: 여:)		명 (남: 여:)	명 (남: 여:)
투자금액	총 투자금액 (A=B+C)	토지 매입가액 (B)	설비투자금액(C=D+E)	
			건설투자비용+기계 장비구입비용(D)	근로환경개선시설 투자비용(E)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천원	

[별지 제2호서식]

보조금(융자금) 정산 신청서

기업명		대표자	(남/여)
보조금(융자금) 유형	<input type="checkbox"/> 기업투자촉진지구 보조금 <input type="checkbox"/> 부지매입비 융자금 <input type="checkbox"/> 대규모투자 특별지원 보조금 <input type="checkbox"/> 중규모 투자기업 지원 보조금 <input type="checkbox"/> 대규모 연구소 특별지원 보조금 <input type="checkbox"/> 도와기업의 관내이전 지원 보조금		
보조금(융자금) 신청일		보조금(융자금) 자원결정 통지일	
착공신고일(계획)		착공신고일(실제)	
투자완료일(계획)		투자완료일(실제)	
보조금(융자금) 수령일자		보조금(융자금) 유형	
기존사업장	<input type="checkbox"/> 폐쇄(청산) <input type="checkbox"/> 매각(양도) <input type="checkbox"/> 유지 <input type="checkbox"/> 계획에 따른 축소		
보조금(융자금) 결정금액	천원	보조금(융자금) 명	지원 금액
			천원
			천원
보조금(융자금) 교부금액	천원	보조금(융자금) 명	지원 금액
			천원
			천원

구분		보조금(융자금) 지원 결정시	투자 완료시
투자 금액	부지매입비	천원	천원
	설비투자금	천원	천원
상시고용인원(전체)		남(), 여() 명	남(), 여() 명
투자사업장 고용인원		남(), 여() 명	남(), 여() 명
신규 고용인원		남(), 여() 명	남(), 여() 명

사업이행여부	<input type="checkbox"/> 적정 <input type="checkbox"/> 일부 부적정 <input type="checkbox"/> 부적정	
자체평가	사유	

「거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위와 같이 보조금(융자금) 정산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거창군수 귀하

보조금(융자금) 정산 결과서

기업명		대표자	(남/여)
보조금(융자금) 유형	<input type="checkbox"/> 기업투자촉진지구 보조금 <input type="checkbox"/> 부지매입비 융자금 <input type="checkbox"/> 대규모투자 특별지원 보조금 <input type="checkbox"/> 중규모 투자기업 지원 보조금 <input type="checkbox"/> 대규모 연구소 특별지원 보조금 <input type="checkbox"/> 도외기업의 관내이전 지원 보조금		
보조금(융자금) 신청일		보조금(융자금) 지원결정 통지일	
착공신고일(계획)		착공신고일(실제)	
투자완료일(계획)		투자완료일(실제)	
보조금(융자금) 지급일자			
기존사업장	<input type="checkbox"/> 폐쇄(청산) <input type="checkbox"/> 매각(양도) <input type="checkbox"/> 유지 <input type="checkbox"/> 계획에 따른 축소		

구분		보조금(융자금) 지원 결정시	투자 완료시
투자 금액	부지매입비	천원	천원
	설비투자금	천원	천원
상시고용인원(전체)		명 (남: 여:)	명 (남: 여:)
신규 고용인원		명 (남: 여:)	명 (남: 여:)
투자사업장 고용인원		명 (남: 여:)	명 (남: 여:)

사업이행여부 평가	<input type="checkbox"/> 완료 <input type="checkbox"/> 일부 완료 <input type="checkbox"/> 일부 환수 <input type="checkbox"/> 전액 환수	
	사유	

보조금(융자금) 교부 결정금액 (A)	천원	OO 보조금	도 비	천원
			시군비	천원
		OO 보조금	도 비	천원
			시군비	천원
1차 지급금액 (B)	천원	OO 보조금	도 비	천원
			시군비	천원
		OO 보조금	도 비	천원
			시군비	천원
미지급금액 (C=A-B)	천원	OO 보조금	도 비	천원
			시군비	천원
		OO 보조금	도 비	천원
			시군비	천원
정산금액 (D)	천원	OO 보조금	도 비	천원
			시군비	천원
		OO 보조금	도 비	천원
			시군비	천원
산정 기준				
2차 지급금액 (E=D-B)	천원	OO 보조금	도비	천원
			시군비	천원
		OO 보조금	도비	천원
			시군비	천원
집행잔액 (A-(B+E))	천원	OO 보조금	도비	천원
			시군비	천원
		OO 보조금	도비	천원
			시군비	천원

「거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위와 같이 보조금(융자금) 정산결과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군수

(관인)

경상남도지사 귀하

사 업 (투 자) 계 획 서

작 성 일 :

기업체명 : (인)

대 표 자 :

귀사에서 제출한 일체의 모든 자료는 우리 행정기관이 지원하는 인센티브 심사에 필요한 자료로만 활용하고, 일체의 기업비밀은 보장됩니다.

다만, 신청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할 경우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니 신청서는 사실을 근거로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작성된 내용은 심사와 직접 관계되므로 가능하면 상세히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서식에 맞지 않는 내용은 별도자료로 제출 가능

□ 투자기업 개요

기업체명		대표자	(남/여)
설립일자		법인(주민)등록번호	
홈페이지주소		사업자등록번호	
업종		표준산업분류코드	
주요생산물			
건설업면허 보유여부	<input type="checkbox"/> 보유 <input type="checkbox"/> 없음	건설업명	
회 사 소 개			

산업 분석

생산공정도

생산공정도	생산공장 요약 설명
<div data-bbox="159 1093 772 1205" style="border: 1px solid black; height: 50px; width: 100%;"></div> <p style="text-align: center;">↓</p> <div data-bbox="159 1272 772 1384" style="border: 1px solid black; height: 50px; width: 100%;"></div> <p style="text-align: center;">↓</p> <div data-bbox="159 1451 772 1563" style="border: 1px solid black; height: 50px; width: 100%;"></div> <p style="text-align: center;">↓</p> <div data-bbox="159 1630 772 1742" style="border: 1px solid black; height: 50px; width: 100%;"></div> <p style="text-align: center;">↓</p> <div data-bbox="159 1809 772 1921" style="border: 1px solid black; height: 50px; width: 100%;"></div>	

투자 설비 내역서

품명	규격(용량)	내용년수	단위	수량	단가	금액	비고 (용도)

□ 투자의 개요

기존 사업장 주소	본사				소유 / 임차
	공장				소유 / 임차
	연구소				소유 / 임차
투자지 주소					소유 / 임차
투자기간					
토지매입계약체결일			착공(예정)일		
공장등록(예정)일 *사업개시(예정)일			투자완료(예정)일		
투자면적(단위 : m²)					
구 분	부지		건물용지		건물연면적
기존사업장					
투자사업장					
계					
투자금액(단위 : 천원)					
구 분	계	N	N + 1	N + 2	N + 3
계					
토지 매입가액					
설비투자 금액	소계				
	건설투자				
	기계장비				
	근로환경				
설비투자 세부 투자항목 * 세부 투자내역서 별첨					
건설투자					
기계장비					
근로환경					

투자의 사유

자금조달 계획

자금재원 조달계획(단위 : 천원)							
투자금액	자기자본		외부조달		계		
세부 조달계획 (단위 : 천원)							
자기자본							
외부자본						투자사업장 담보대출 계획 여부	
						<input type="checkbox"/> 있음	<input type="checkbox"/> 없음
참고사항							
부채비율	총부채 (A)		자기자본 (B)		부채비율 (A/B)	%	
순유동자산	유동자산 (A)		유동부채 (B)		순유동자산 (A-B)		

□ 고용 계획

고용계획(단위 : 명)						
구분	신청시 상시고용인원 (A)	투자사업장 상시고용인원(B)				투자 후(A+B)
		N* *신청년도	N+1	N+2	N+3	
계	(남: 여:) 명	(남: 여:) 명				(남: 여:) 명
연구·개발	(남: 여:) 명	(남: 여:) 명	(남: 여:) 명	(남: 여:) 명	(남: 여:) 명	(남: 여:) 명
사무·영업	(남: 여:) 명	(남: 여:) 명	(남: 여:) 명	(남: 여:) 명	(남: 여:) 명	(남: 여:) 명
생산	(남: 여:) 명	(남: 여:) 명	(남: 여:) 명	(남: 여:) 명	(남: 여:) 명	(남: 여:) 명
고용사유						
연구·개발직						
사무·영업직						
생산직						

□ 최근 3년간 주요 경영실적

(단위 : 백만원, %)

구분	자산	부채	자본	매출액	당기 순이익	영업 이익	이자 비용
N*-1 *신청년도							
N-2							
N-3							
최근 3년 평균 증가율							

신규투자(안)의 사업성 전망

(단위 : 백만원, %)

구 분	추정 재무제표(예상액)							
	[(사업개시일+1년) ~ 투자완료 후 5년]							
연 도	N*+1 *사업개시일	N+2	N+3	N+4	N+5	N+6	N+7	N+8
매출액								
영업이익								
연평균 증가율(CAGR)		매출액		%		영업이익		%
사업성 전망								

신청지역을 투자대상으로 선정 한 이유
(대체 투자 지역과 비교시 장·단점 포함)

- 향후 5년간 지역 및 지역경제 기여효과(직·간접 고용규모, 세금납부, 원부자제 조달선 및 제품 판매선에 대한 전후방 연관효과 등 포함)

- 기타 필요한 사항

보조금(융자금) 투자이행확약서

○ 관련 규정 : 「거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등

보조금(융자금) 신청 당시 제출한 투자계획 등에 따른 투자규모, 고용규모, 투자완료일 등을 관련 규정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며, 조례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라 정산할 것을 약속합니다.

○ 투자사업장(소재지)	
○ 투자기간	~ (년)
○ 총 투자규모	000 천원
- 입지 투자	000 천원
- 설비 투자	000 천원
○ 고용계획(명)	00 명 (남: 여:)
○ 보조금 지원규모	000 천원
- OO 보조금	000 천원
- OO 보조금	000 천원

관련 규정의 지원 대상, 요건, 절차, 보조금의 환수, 융자금의 조기상환, 융자금의 이자부과 등의 내용을 확인하였고, 이를 준수할 것을 약속합니다.

만약, 위 사항을 준수하지 못하거나 관련 법령 및 규정 등을 위반하여 보조금(융자금) 환수(조기상환) 결정사유가 발생할 경우, 환수(조기상환)에 해당하는 금액(이자 포함)을 해당 지자체에 반납할 것을 약속합니다.

확 인 일 : 20__년 __월 __일

확 약 자 : (기업명) (자필) (직인)

(대표자) (자필) (서명)

포상금 지급 신청서

신청인	협회 또는 단체명			전화	
	성명		생년월일		(남/여)
	주소				

유치기업 현황

구분	기업명	소재지	본사 또는 공장, 연구소 부지면적(제곱미터)	종업원수	공장등록일(사업개시일)
현소재지					
이전지역					

유치기업 실투자액(단위: 백만원)

계	부지매입비	본사·공장·연구소 등 투자금액			
		건축비	공작물	기계설비	부속시설등

포상금 지급대상 및 기여도

성명	성별	소속	직위(직급)	기여도(퍼센트)	기여내용	확인
	(남/여)					(인)
	(남/여)					(인)
	(남/여)					(인)

「거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9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기업유치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거창군수 귀하

〈구비서류〉

1. 업무협약 사본 1부
2. 유치기업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사업자등록증, 공장등록증 등)
3. 실투자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4. 성과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 계좌사본(법인의 경우 법인계좌) 1부
5. 그 밖의 투자유치 실적 및 공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입법예고 의견 제출서

□ 조례명 : 「거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규칙안 내용	의 건	비 고

□ 지방재정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기부·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14. 5. 28.>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 보조 재원(財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공공기관"이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4. 5. 28.>

1.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법령의 근거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하여진 기관
2.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

③ 삭제 <2013. 7. 16.>

□ 지방자치법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 4. 6., 2007. 5. 17., 2009. 12. 29., 2011. 7. 14., 2017. 4. 18.>

1.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조직, 행정관리 등에 관한 사무
- 가. 관할 구역 안 행정구역의 명칭·위치 및 구역의 조정
- 나. 조례·규칙의 제정·개정·폐지 및 그 운영·관리
- 다. 산하(傘下) 행정기관의 조직관리
- 라. 산하 행정기관 및 단체의 지도·감독

- 마. 소속 공무원의 인사·후생복지 및 교육
- 바. 지방세 및 지방세 외 수입의 부과 및 징수
- 사. 예산의 편성·집행 및 회계감사와 재산관리
- 아. 행정장비관리, 행정전산화 및 행정관리개선
- 자. 공유재산관리(公有財産管理)
- 차. 가족관계등록 및 주민등록 관리
- 카.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각종 조사 및 통계의 작성
- 2. (생략)
- 3. 농림·상공업 등 산업 진흥에 관한 사무
 - 가. 소류지(小溜池)·보(洑) 등 농업용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
 - 나. 농산물·임산물·축산물·수산물의 생산 및 유통지원
 - 다. 농업자재의 관리
 - 라. 복합영농의 운영·지도
 - 마. 농업 외 소득사업의 육성·지도
 - 바. 농가 부업의 장려
 - 사. 공유림 관리
 - 아. 소규모 축산 개발사업 및 낙농 진흥사업
 - 자. 가축전염병 예방
 - 차. 지역산업의 육성·지원
 - 카. 소비자 보호 및 저축 장려
 - 타. 중소기업의 육성
 - 파. 지역특화산업의 개발과 육성·지원
 - 하. 우수토산품 개발과 관광민예품 개발
- 4. ~ 6.(생략)

□ 경상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산업구조의 고도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국내외 기업의 투자유치와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투자기업”이란 도내에서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기존 건축물의 용도를 사업장의 용도로 변경 또는 폐건물을 투자 사업장 용도로 매입하여 사업 시설

을 설치하는 기업을 말한다. <개정 2019.1.3.>

2.“사업장”이란 투자기업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생산활동을 하는 공간을 말한다. 다만, 제조업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을 말한다. <개정 2019.1.3.>

3. 외국인투자”란 「외국인투자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다. <개정 2019.1.3.>

4. “외국인투자기업”이란 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다. <개정 2019.1.3.>

5.“외국인투자환경개선시설”이란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8항에 따른다. <개정 2019.1.3.>

6.“연구소”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 2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를 말한다. <개정 2019.1.3.>

7.“균형발전대상지역”이란 「경상남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지원대상지역을 말한다. <개정 2019.1.3.>

8.“전략산업”이란 「경상남도 전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다. <개정 2019.1.3.>

9. "사업개시일"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을 말한다. <신설 2019.1.3.>

가. 제조업의 경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공장등록일

나. 제조업 외의 경우 투자기업이 해당 사업장을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라 사업자 등록을 한 날

제2장 기업투자에 대한 지원

제3조(기업투자촉진지구 지정 등) ①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도의 소재 사업장의 도내 유치와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역을 기업투자촉진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시장·군수와 협의하고 제23조의 경상남도투자유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9.1.3.>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성된 지방 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2. 지역균형개발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② 기업투자촉진지구에 입주하는 사업장에 대하여 입지보조금, 고용보조금,

교육훈련보조금, 시설보조금, 이전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기준과 지원한도액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9.1.3.>

③ 삭제 <2019.1.3.>

④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기업투자촉진지구의 분양이 완료된 경우 및 존치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시장·군수와 협의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9.1.3.>

제4조(수도권기업의 도내 이전 등에 대한 지원)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 11조 및 제19조에 따라 수도권기업의 도내 이전기업, 도내 신·증설투자기업, 도내로의 국내복귀기업 등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 기업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도외 기업의 도내 이전 지원) ①도지사는 기업이 도외에 소재하는 본점, 공장, 연구소 등 독립된 사업장을 도내로 이전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1.3.>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지원기준, 지원한도액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19.1.3.>

제6조(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① 도지사는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인정되는 대규모 투자기업에 예산의 범위에서 최대 100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1.3.>

② 제1항의 지원대상, 지원기준 등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9.1.3.>

③ 제1항의 투자기업의 인근도로에 대하여 「도로명주소법」 제8조의2에 따라 기업명을 딴 명예도로명을 부여하도록 시장·군수에게 권고할 수 있다.

제6조의2(투자촉진기반시설 지원) 도지사는 민간투자촉진을 위하여 도내 투자기업을 위한 도로, 용수, 전기 등 기반시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경상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해당 시·군에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신설 2016.01.21.> <개정 2019.1.3.>

제7조(임대용지 공급) 도지사는 전략산업 활성화 및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기업유치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산업용 부지를 매입하여 임대할 수 있다.

제8조(서북부권역 등 균형발전대상지역 지원) ① 도지사는 서북부권역 등 균형발전대상지역에 투자하는 기업에 대하여 지역별 낙후 정도에 따라 차등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투자기업의 고용 등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를 고려하여 필요할 경우 보조금 등의 지원규모를 2배의 범위에서 확대지원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조금 등의 차등지원 금액, 지역 및 업종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정한다.

제9조(우선 지원에 대한 특례) 제4조·제5조·제6조·제6조의2 및 제8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 및 융자금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1.3.>

1. 전략산업 업종 및 연구소 <개정 2019.1.3.>
2. 서북부권역 등 낙후지역에 입주하는 기업
3. 그 밖에 도지사가 우선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기업

제3장 외국인투자의 지원

제10조(외국인투자진흥관실 설치 등) ① 투자유치 업무를 신속하고 원활히 처리하기 위하여 투자통상과에 외국인투자진흥관실을 둔다. <개정 2016.03.24, 2018.12.6>

② 도지사는 외국인투자진흥관실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 및 시·군으로부터 인력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③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등 투자유치기관과의 업무협조와 투자유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경상남도서울본부에 투자유치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11조(지방세 감면) 외국인투자에 대한 취득세 감면은 「경상남도 도세 감면 조례」에 따른다.

제12조(금융지원) 외국인투자기업은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국내기업과 같은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15.12.10.>

제13조(지원제한) 법 제14조의2에 따라 외국인투자에 대하여 현금을 지원하는 경우에 제3조부터 제6조까지에 규정된 보조금을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제14조(외국인투자 환경개선시설 지원) 도지사는 외국인투자 환경개선시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와 운영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대상과 지원한도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15조(국내기업 지원기준 준용) 외국인투자기업의 보조금 지원과 관련하여 본 장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그 밖의 장에서 규정한 투자기업 지원 규정을 따른다. 다만,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지원 규정과 국내기업 지원 규정을 중복하여 적용할 수 없다. <개정 2019.1.3.>

제16조(사업타당성 분석용역) 도지사는 외국인투자기업 또는 외국투자가가 신규투자 또는 새로운 사업장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투자실현 가능성 및 기대효과 등 타당성 분석을 위하여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19.1.3.>

제17조(공유재산임대 및 매각특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 등에게 매각한 토지 등의 매입대금의 분할납부 등과 외국인투자기업 등에게 토지 등을 임대하는 경우 대부료 감면율은 「경상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4장 투자유치진흥기금의 설치

제18조(기금의 설치) ① 도지사는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따라 투자유치 지원의 재원 확보를 위한 경상남도 투자유치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도 및 시·군의 출연금
2. 지방채 발행으로 조성된 자금
3. 차입금
4. 그 밖의 수입금

③ 도지사 및 시장·군수는 제2항제1호의 출연금을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출연할 수 있다.

제19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위한 용도에 사용한다.

1. 각종 보조금의 지급
2. 임대산업단지 용지매입
3. 사업장 부지 매입비 용자 지원 <개정 2019.1.3.>
4.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지원
5. 그 밖에 도지사가 투자유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의 지원대상, 지원기준 등 세부적인 지원 절차는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9.1.3.>

제20조(기금의 관리·운영) ① 기금은 「경상남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7조에 따라 통합기금에 위탁하여야 한다. <개정 2016.01.21.>

②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16.01.21.>

제21조(기금운용의 계획 등) ① 도지사는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도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야 한다.

제22조(기금회계공무원 등) ① 기금의 효율적 관리·운용을 위하여 기금운용관 및 기금출납원을 두되, 기금운용관은 투자통상과장이 되고 기금출납원은 기금업무담당사무관이 된다. <개정 2016.03.24, 2018.12.6>

② 기금의 집행은 「경상남도 재무회계 규칙」에 따른다.

제5장 투자유치위원회 설치·운영

제23조(위원회의 설치) ① 도지사는 투자기업의 효율적인 유치와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9.1.3.>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1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투자유치 소관 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투자유치 소관 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의 균형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위촉한다. <개정 2015.7.2 2017.1.26, 2018.12.6, 2019.11.7.>

1. 경상남도의회에서 추천한 도의원

2. 투자유치 관련기관·단체·기업의 전·현직 임원

3. 투자유치 관련 분야의 변호사·공인회계사 및 대학교수

4. 그 밖의 국내외 투자유치에 관하여 전문적 식견과 경험을 가진 사람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6.03.24, 2018.12.6, 2019.1.3>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의 사임 등 임기만료 외의 사유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19.1.3.>

⑥ 위원회에는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며, 간사는 투자유치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투자유치 담당사무관이 된다. <신설 2019.1.3.>

제24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를 심의한다.

1. 국내기업 및 외국인투자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주요 시책

2. 제20조에 따른 경상남도 투자유치진흥기금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3. 국내기업투자촉진지구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국내기업 및 외국인투자의 고충처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25조(회의 소집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하며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6조(위원의 수당과 여비지급)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상남도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7조(위원의 제척 등) ① 위원회의 위원은 자신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의결에는 제척된다.

② 심의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그 사유를 소명하고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위원회의 위원이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6장 보조금의 지원 등

제28조(시·군의 투자기업유치에 대한 보조금 지원 등) ① 도지사는 시장·군수의 투자기업 지원 신청에 따라 투자기업에 지원하는 보조금 및 융자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1.3.>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또는 융자금의 도와 시·군의 부담비율 및 지원절차 등은 시장·군수와 협의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개정 2019.1.3.>

③ 삭제 <2019.1.3.>

제29조(투자기업의 사후관리) ①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투자유치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관하여 지원을 받은 기업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에게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계 공무원에게 조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10.29.>

② 시장·군수는 보조금 등을 지원받은 기업의 투자계획의 이행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0조(지원 등의 취소 및 환수 등) ① 도지사는 이 조례에 따른 보조금 또는 융자금의 지원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지원을 취소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원받은 보조금은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고, 융자금은 조기상환을 명하여야 한다.

1. 사업개시일부터 규칙으로 정하는 사후관리기간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휴·폐업한 경우 <개정 2019.1.3.>
2.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았다고 인정될 경우
3. 지원대상이 된 관련 사업을 포기하거나 축소한 경우
4. 부지매입 또는 임차 계약을 체결한 후 2년 이내에 사업장의 건설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융자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사업장의 건설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개정 2019.1.3.>
5. 사업장을 준공한 후 2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가동하지 아니한 경우 <개정 2019.1.3.>
6. 사업장의 공사가 예정공정에 현저히 미달하거나 완공의 가망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개정 2019.1.3.>
7.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이 규칙으로 정하는 사후관리기간 동안 정산 시의 고용인원을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
8. 융자금을 지원받은 기업이 규칙으로 정하는 사업기간 내에 사업계획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9. 그 밖에 보조금 또는 융자금 지원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환수 또는 조기상환하여야 할 보조금 또는 융자금에 대해서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31조(지원받은 기업의 의무) ①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지원받은 기업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당초 계획된 부지에서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다만, 부지매입금을 지원받은 기업이 착공 전에 불가피한 사유로 당초 계획된 부지에서 사업을 추진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도지사의 사전 승인을 받아 사업 부지를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9.1.3.>

②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사업계획서상의 사업을 이행 기간 이상 경영하고 고용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32조(이중지원 금지) ①이 조례에서 정한 보조금 또는 융자금은 중복 지원할 수 없다. 다만, 제6조의2에 따른 투자촉진기반시설 지원금을 제외한다.
<개정 2019.1.3.>

② 도지사는 보조금을 지원 받으려는 기업이 국가나 도 등으로부터 같은 목적의 다른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신설 2019.1.3.>

제7장 보칙

제33조(투자유치자문관) ① 도지사는 국내외 투자유치전문가를 경상남도 투자유치자문관(이하 “자문관”이라 한다)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② 자문관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비, 여비, 그 밖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2017.8.3.>

제34조(시·군 유치활동 지원) ① 도지사는 시·군의 투자유치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군수는 유치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급이 예상되는 경우 미리 도지사 와 서면으로 협의하여야 한다.

제35조(투자유치 기여자 보상) 도지사는 국내외 투자 및 기업 유치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되는 개인 또는 기업·단체(법인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할 수 있다.

제3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외국인 투자촉진법

제14조(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투자유치활동에 대한 지원)

① 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제18조에 따른 외국인투자지역의 조성, 외국인투자기업등에 임대할 용지 매입비의 용자, 토지등의 임대료 감면 및 분양가액 인하(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등을 외국인투자기업등에 임대료를 감면하여 임대하거나 조성원가 이하로 분양할 수 있도록

그 감면분(減免分) 또는 분양가액과 조성원가의 차액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교육훈련보조금 등 각종 보조금의 지급, 그 밖에 외국인투자유치사업에 필요한 자금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최대한 지원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자금을 지원하는 기준과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인투자위원회가 정한다. 이 경우 자금 지원 기준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투자유치 노력과 실적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

③ 국가는 매년 제1항에 따른 지원자금의 규모를 미리 예측하여 이를 예산에 계상(計上)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는 외국인투자유치를 촉진하거나 외국인투자환경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용보조금 등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등에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 1. 30.]

거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거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취지 및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거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2월 4일

거 창 군 수

1. 자치법규명 : 「거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2. 개정이유

- 경상남도 조례 개정 사항을 우리군 조례에 포함하고 다소 흐트러져 있는 조례를 각 분야별로 체계화하여 정리함과 동시에 투자기업에 대한 지원 기준을 세분화하고 명확하기 위함

3. 주요내용

- 조례 체계 변경 : 제6장 제28조 ⇒ 제5장 제40조
- 투자유치 위원회 체계 단일화 (안 제3조 ~ 제10조)
 - 조례 및 시행규칙에 나누어져 있는 사항을 조례에 통합 정리
- 대규모 투자기업 특별 지원 및 추가 지원 (안 제15조~제16조)
 - 500억원 이상 150명 이상 투자기업 100억원 이내(도비 포함), 추가지원 대상은 30억원 이내 추가 지원

- 중규모 투자기업 특별지원 (안 제17조)
 - 100억원 이상 40명 이상 투자기업 50억원 이내 지원(도비포함)
- 소규모기업 지원 (안 제18조) : 투자유치위원회 심의 결정
- 관광사업 기반시설 지원 (안 제19조)
 - 300억원 이상 10명 이상, 투자금액의 3%이내 60억원 이내

4. 전부개정조례안 : 붙임

5. 입법예고 기간 : 2019. 12. 04. ~ 2019. 12. 24.(20일간)

6. 의견제출

- 이 조례의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2월 24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거창군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등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직접 방문 등

- 주 소 : (우50132) 경남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3, 미래전략과

- 전화번호 : 055)940-3822

- FAX : 055)940-3679

입법예고 의견 제출서

□ 조례명 : 「거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의 건	비 고

거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

거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거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산업구조의 고도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국내외 기업의 투자유치와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투자기업"이란 거창군내(이하 "관내"라 한다)에서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기존 건축물의 용도를 사업장의 용도로 변경 또는 폐건물을 투자 사업장 용도로 매입하여 사업 시설을 설치하는 기업을 말한다.
2. "사업장"이란 투자기업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생산활동을 하는 공간을 말한다. 다만, 제조업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을 말한다.
3. "외국인투자"란 「외국인투자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4호에서 규정한 것을 말한다.
4. "외국인투자기업"이란 법 제2조제1항제5호에서 규정한 외국투자자가 출자한 기업을 말한다.
5. "외국인투자환경개선시설"이란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제2조제8항에서 규정한 것을 말한다.
6. "연구소"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 2에 따른 기업 부설연구소를 말한다.
7. "사업개시일"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을 말한다.
 - 가. 제조업의 경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공장 등록일
 - 나. 제조업 이외의 경우 투자기업이 해당 사업장을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라 사업자 등록을 한 날
8. "기반시설"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6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9. "관광사업"이란 관광객을 위하여 운송·숙박·음식·운동·오락·휴양 또는 용역을 제공하거나 그 밖에 관광에 딸린 시설을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업을 말한다.
10. "관광사업자"란 관광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등록·허가 또는 지정(이하 "등록등")

이라 한다.)을 받거나 신고한 자를 말한다.

11. "관광사업의 종류"란 「관광진흥법」제3조제1항의 관광숙박업, 관광객 이용시설업, 국제회의업, 유원시설업, 관광편의시설업과 별도로 기업연수원을 포함한다. 단 골프장은 제외한다.

제2장 투자유치 지원체제

제3조(투자유치위원회의 설치) ①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효율적인 투자유치 활동과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거창군 투자유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특정 성의 위촉직 위원수가 6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1. 거창군의회에서 추천한 군의원

2. 군 소속 공무원

3. 투자유치 업무에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경제계, 법조계, 학계, 금융계 등의 인사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4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국내기업 및 외국인투자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주요 시책

2. 국내·외 투자기업에 대한 지원과 관련된 사항

3. 국내기업투자촉진지구 지정 신청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5조(위원의 위촉 해제) 군수는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6조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데도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4. 그 밖에 위원으로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6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이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조언, 연구,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이었던 경우
 5. 위원이 위촉된 날을 기준으로 3년 이내에 소속되었던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에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심의·의결에 참여하지 못한 위원은 재적위원 수 산정에서 제외한다.

- 제7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목적 등을 회의 개최 5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⑤ 위원장은 심의사항이 경미하거나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우편 등을 이용하여 서면심의로 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

- 제8조(간사 및 회의록)**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 ② 간사는 기업지원 및 투자유치 담당주사가 된다.
-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 ④ 위원장은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9조(의견 청취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공무원을 제외한 위원 및 위원회에 참석한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거창군 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투자유치진흥기금) ① 군수는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따라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설치·운영하는 경상남도 투자유치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구성에 필요한 재원을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반영하여 출연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이 부담하여야 할 출연금은 도지사가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군수는 기금으로 조성된 자금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기금의 지원을 도지사에게 요청할 수 있다.

1. 각종 보조금의 지급
 2. 임대 산업단지 용지 매입
 3. 사업장 매입비 용자 지원
 4.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지원
 5. 그 밖에 군수가 투자유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③ 제2항에 따른 기금의 지원대상, 지원 기준 등 세부적인 지원절차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3장 국내기업투자에 대한 지원

제12조(국내기업투자촉진지구 지정 등) ① 군수는 거창군외(이하 “군외”라 한다) 소재 공장의 관내 유치와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역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에게 국내기업투자촉진지구로 지정을 신청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주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성된 지방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2. 지역균형개발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 ② 국내기업투자촉진지구에 입주하는 공장에 대하여 입지보조금, 고용보조금, 교육훈련보조금, 시설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 ③ 군외에 소재하는 공장을 국내기업투자촉진지구로 이전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이전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 ④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국내기업투자촉진지구의 분양이 완료된 경우 및 존치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지정 해제를 요청할 수 있다.
- ⑤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지원내용, 지원절차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수도권기업의 관내 이전 등에 대한 지원)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제11조 및 제19조에 따라 수도권기업의 관내 이전 기업, 관내 신·증설투자기업, 관내로의 국내복귀기업 등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한「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 기업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도외기업 본점의 관내 이전 지원) ① 군수는 기업이 경상남도외에 소재하는 본점, 공장, 연구소 등 독립된 사업장을 관내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도비포함 최대 10억원 이내) 또는 융자금(최대 50억원 이내)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내용, 지원절차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5조(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① 군수는 투자금액이 500억원 이상이거나 신규로 고용하는 상시고용인원 150명 이상인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최대 100억원까지(도비포함)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내용, 지원절차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6조(특별지원금 추가지원) ① 군수는 제15조에 따른 대규모 투자기업 중 신규로 고용하는 상시고용인원 150명 이상인 기업에 대해 특별지원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최대 30억원까지 추가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내용, 지원절차 등은 제15조를 준용한다.

제17조(중규모 투자기업 특별지원) ① 군수는 투자기업 중 지역경제에 파급되는 효과가 큰 중규모 기업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최대 50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②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기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기업이 사업장을 관내로 이전하는 경우, 단 관내에서 관내 이전의 경우 기존의 사업장과 비교해 자산가치 및 고용인원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그 증가한 부분에 대해서만 지원이 가능함
2. 기업이 관내에 사업장을 신·증설하는 경우
3. 기업이 관내에서 창업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8조(소규모기업 지원) 군수는 향후 발전가능성과 잠재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소규모 투자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단, 지원내용과 시기는 투자유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제19조(관광사업 기반시설 보조금 지원) ① 군수는 관광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설

계비, 용역비, 토지매입비, 건축비, 기반시설 설치비 등을 포함한 총 투자금액이 300억 원 이상이고, 신규 상시고용인원이 30명 이상인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단, 「관광진흥법」에 따른 다른 보조금 및 기금 등 중복 지원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내용, 지원절차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0조(개별입주 기업에 대한 지원) ① 국내기업투자촉진지구 외에 사업장을 신설 및 이전하는 경우에도 제12조제2항 및 제3항에 준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21조(기업유치 특별지원) 군수는 제12조부터 제18조까지 지원기준에도 불구하고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군 의회의 동의를 받아 이 조례에서 정한 범위를 초과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22조(관내기업 지원) ① 관내기업이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와 그 밖에 기업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계획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내용, 지원절차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3조(농공단지입주기업에 대한 특례) ① 군수는 농공단지의 분양촉진을 위하여 분양대금의 완납 전에 분양계약을 해지하여 다시 분양하는 토지에 입주하는 기업에 대하여 분양가격을 감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분양가격을 감면할 수 있는 범위는 토지분양대금의 상환에 따른 금융비용 내에서 결정할 수 있고, 분양가격 감면에 따른 부족 사업비에 대하여는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제24조(기반시설 사업지원 등) 군수는 관내에 입주하는 국내·외국인의 투자사업 및 기업 중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반시설을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제25조(임대용지 공급) 군수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기업유치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산업용 부지를 매입하여 임대할 수 있다.

제26조(채권확보) 군수는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의 사업계획서 이행확보를 위하여 해당 사업과 관련된 토지 등에 1순위 저당권 설정 또는 이행보증보험증권 가입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4장 외국인투자의 지원

제27조(외국인투자에 대한 민원처리 등) ① 군수는 외국인투자를 촉진하거나 외국인 투자환경의 개선을 위해 외국인 투자유치에 따른 민원은 다른 민원에 우선하여 일괄처리하는 방식으로 지원하며 처리하여야 할 민원사무의 종류와 절차는 법 제17조에 따른다.

② 법 제14조에 따른 보조금 지원대상이 되는 외국인투자는 해당 기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비율이 30퍼센트 이상이거나 외국인이 제1대 주주이어야 한다.

③ 보조금 지원과 관련하여 본 장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그 밖의 장에서 규정한 투자기업 지원규정을 따른다.

④ 제3항에 따른 지원대상, 지원내용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8조(지방세 감면) 외국인투자에 대한 지방세 감면은 「거창군세 감면 조례」에 따른다.

제29조(금융지원) 외국인투자기업은 법 제3조제2항, 「거창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기업과 같은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제30조(지원제한) 법 제14조의2에 따라 외국인투자에 대하여 현금을 지원하는 경우에 제7조부터 제12조까지에 규정된 보조금을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제31조(외국인투자 환경개선시설 지원) 군수는 외국인투자 환경개선시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대상과 지원한도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32조(공유재산 임대 및 매각특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 등에게 매각한 토지 등의 매입대금의 분할납부 등과 외국인투자기업 등에게 토지 등을 임대하는 경우 대부분 감면율은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5장 보조금의 신청 등

제33조(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보조금 신청 등) ① 군수는 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보조금 및 융자금 지원을 위하여 도비 등 자금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도지사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투자기업의 관내 유치를 위하여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지원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여야 할 경비의 일부를 분담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이 분담하는 경비의 부담비율 및 지원절차 등은 도지사가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4조(투자기업의 사후관리) ① 군수는 투자유치 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원을 받은 기업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에게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에게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보조금 등을 지원받은 기업의 투자계획의 이행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5조(지원 등의 취소 및 환수 등) ① 군수는 이 조례에 따른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지원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지원을 취소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원받은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고, 융자금은 조기상환을 명하여야 한다.

1. 사업개시일부터 규칙에서 정하는 사후관리기간 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휴·폐업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았다고 인정될 경우
3. 지원대상이 된 관련 사업을 포기하거나 축소한 경우
4. 임대 및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2년 이내에 사업장의 건설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융자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사업장의 건설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5. 사업장을 준공한 후 2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가동하지 아니한 경우
6. 사업장의 공사가 예정공정에 현저히 미달하거나 완공의 가망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7.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이 규칙으로 정하는 사후관리기간 동안 정산의 고용인원을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
8. 융자금을 지원받은 기업이 규칙으로 정하는 사업기간 내에 사업계획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9. 그 밖에 보조금 또는 융자금 지원의 목절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환수 또는 조기상환하여야 할 보조금 또는 융자금에 대해서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36조(융자금의 상환) ① 융자금의 원금은 5년 거치 3년 동일하게 나눠 상환한다.

② 제35조제1항의 융자금의 조기 상환명령에 따라 상환하는 경우에는 상환원금에 조기상환 사유발생일부터 취급금융기관의 같은 조건의 기업대출 평균금리를 적용하여 이자를 부과하여야 하며, 조기상환 기한은 고지일로부터 1개월 이내로 한다. 또한 상환기간을 경과하여 상환하는 자금은 취급금융기관의 기업대출 상환연체율을 적용한 연체이자를 더한다.

제37조(지원받은 기업의 의무) ①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지원받은 기업은 정당한 사

유가 없는 한 당초 계획된 부지에서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다만, 부지매입금을 지원 받은 기업이 착공 전에 불가피한 사유로 당초 계획된 부지에서 사업을 추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전 승인 절차를 거친 후 사업부지를 변경할 수 있다.

②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사업계획서상의 사업을 이행 기간 이상 경영하고 고용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38조(이중지원 금지) 이 조례에서 정한 보조금 또는 융자금 등은 중복 지원할 수 없다.

제39조(투자유치 기여자 보상) 군수는 국내외 투자 및 기업 유치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되는 자(개인이나 단체·기관·기업·공무원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할 수 있으며, 공무원의 경우 인사상 우대를 할 수 있다.

제4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종전 조례에 따라 보조금을 신청하거나 지원 받은 기업은 신청 당시의 조례를 따른다.

② 이 조례시행 당시 종전의 거창군투자유치위원회는 이 개정규정에 따라 구성된 거창군투자유치위원회로 본다. 다만, 위원의 임기의 기산일은 그 위촉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 지방재정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기부·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14. 5. 28.>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 보조 재원(財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공공기관"이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4. 5. 28.>

1.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법령의 근거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하여진 기관
2.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

③ 삭제 <2013. 7. 16.>

□ 지방자치법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 4. 6., 2007. 5. 17., 2009. 12. 29., 2011. 7. 14., 2017. 4. 18.>

1.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조직, 행정관리 등에 관한 사무
- 가. 관할 구역 안 행정구역의 명칭·위치 및 구역의 조정
- 나. 조례·규칙의 제정·개정·폐지 및 그 운영·관리
- 다. 산하(傘下) 행정기관의 조직관리
- 라. 산하 행정기관 및 단체의 지도·감독

- 마. 소속 공무원의 인사·후생복지 및 교육
- 바. 지방세 및 지방세 외 수입의 부과 및 징수
- 사. 예산의 편성·집행 및 회계감사와 재산관리
- 아. 행정장비관리, 행정전산화 및 행정관리개선
- 자. 공유재산관리(公有財産管理)
- 차. 가족관계등록 및 주민등록 관리
- 카.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각종 조사 및 통계의 작성
- 2. (생략)
- 3. 농림·상공업 등 산업 진흥에 관한 사무
 - 가. 소류지(小溜池)·보(洑) 등 농업용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
 - 나. 농산물·임산물·축산물·수산물의 생산 및 유통지원
 - 다. 농업자재의 관리
 - 라. 복합영농의 운영·지도
 - 마. 농업 외 소득사업의 육성·지도
 - 바. 농가 부업의 장려
 - 사. 공유림 관리
 - 아. 소규모 축산 개발사업 및 낙농 진흥사업
 - 자. 가축전염병 예방
 - 차. 지역산업의 육성·지원
 - 카. 소비자 보호 및 저축 장려
 - 타. 중소기업의 육성
 - 파. 지역특화산업의 개발과 육성·지원
 - 하. 우수토산품 개발과 관광민예품 개발
- 4. ~ 6.(생략)

□ 경상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산업구조의 고도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국내외 기업의 투자유치와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투자기업”이란 도내에서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기존 건축물의 용도를 사업장의 용도로 변경 또는 폐건물을 투자 사업장 용도로 매입하여 사업 시설

을 설치하는 기업을 말한다. <개정 2019.1.3.>

2.“사업장”이란 투자기업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생산활동을 하는 공간을 말한다. 다만, 제조업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을 말한다. <개정 2019.1.3.>

3. 외국인투자”란 「외국인투자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다. <개정 2019.1.3.>

4. “외국인투자기업”이란 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다. <개정 2019.1.3.>

5.“외국인투자환경개선시설”이란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8항에 따른다. <개정 2019.1.3.>

6.“연구소”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 2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를 말한다. <개정 2019.1.3.>

7.“균형발전대상지역”이란 「경상남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지원대상지역을 말한다. <개정 2019.1.3.>

8.“전략산업”이란 「경상남도 전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다. <개정 2019.1.3.>

9. "사업개시일"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을 말한다. <신설 2019.1.3.>

가. 제조업의 경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공장등록일

나. 제조업 외의 경우 투자기업이 해당 사업장을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라 사업자 등록을 한 날

제2장 기업투자에 대한 지원

제3조(기업투자촉진지구 지정 등) ①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도의 소재 사업장의 도내 유치와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역을 기업투자촉진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시장·군수와 협의하고 제23조의 경상남도투자유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9.1.3.>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성된 지방 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2. 지역균형개발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② 기업투자촉진지구에 입주하는 사업장에 대하여 입지보조금, 고용보조금,

교육훈련보조금, 시설보조금, 이전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기준과 지원한도액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9.1.3.>

③ 삭제 <2019.1.3.>

④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기업투자촉진지구의 분양이 완료된 경우 및 존치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시장·군수와 협의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9.1.3.>

제4조(수도권기업의 도내 이전 등에 대한 지원)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 11조 및 제19조에 따라 수도권기업의 도내 이전기업, 도내 신·증설투자기업, 도내로의 국내복귀기업 등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 기업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도외 기업의 도내 이전 지원) ①도지사는 기업이 도외에 소재하는 본점, 공장, 연구소 등 독립된 사업장을 도내로 이전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1.3.>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지원기준, 지원한도액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19.1.3.>

제6조(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① 도지사는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인정되는 대규모 투자기업에 예산의 범위에서 최대 100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1.3.>

② 제1항의 지원대상, 지원기준 등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9.1.3.>

③ 제1항의 투자기업의 인근도로에 대하여 「도로명주소법」 제8조의2에 따라 기업명을 딴 명예도로명을 부여하도록 시장·군수에게 권고할 수 있다.

제6조의2(투자촉진기반시설 지원) 도지사는 민간투자촉진을 위하여 도내 투자기업을 위한 도로, 용수, 전기 등 기반시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경상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해당 시·군에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신설 2016.01.21.> <개정 2019.1.3.>

제7조(임대용지 공급) 도지사는 전략산업 활성화 및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기업유치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산업용 부지를 매입하여 임대할 수 있다.

제8조(서북부권역 등 균형발전대상지역 지원) ① 도지사는 서북부권역 등 균형발전대상지역에 투자하는 기업에 대하여 지역별 낙후 정도에 따라 차등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투자기업의 고용 등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를 고려하여 필요할 경우 보조금 등의 지원규모를 2배의 범위에서 확대지원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조금 등의 차등지원 금액, 지역 및 업종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정한다.

제9조(우선 지원에 대한 특례) 제4조·제5조·제6조·제6조의2 및 제8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 및 융자금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1.3.>

1. 전략산업 업종 및 연구소 <개정 2019.1.3.>
2. 서북부권역 등 낙후지역에 입주하는 기업
3. 그 밖에 도지사가 우선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기업

제3장 외국인투자의 지원

제10조(외국인투자진흥관실 설치 등) ① 투자유치 업무를 신속하고 원활히 처리하기 위하여 투자통상과에 외국인투자진흥관실을 둔다. <개정 2016.03.24, 2018.12.6>

② 도지사는 외국인투자진흥관실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 및 시·군으로부터 인력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③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등 투자유치기관과의 업무협조와 투자유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경상남도서울본부에 투자유치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11조(지방세 감면) 외국인투자에 대한 취득세 감면은 「경상남도 도세 감면 조례」에 따른다.

제12조(금융지원) 외국인투자기업은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국내기업과 같은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15.12.10.>

제13조(지원제한) 법 제14조의2에 따라 외국인투자에 대하여 현금을 지원하는 경우에 제3조부터 제6조까지에 규정된 보조금을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제14조(외국인투자 환경개선시설 지원) 도지사는 외국인투자 환경개선시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와 운영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대상과 지원한도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15조(국내기업 지원기준 준용) 외국인투자기업의 보조금 지원과 관련하여 본 장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그 밖의 장에서 규정한 투자기업 지원 규정을 따른다. 다만,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지원 규정과 국내기업 지원 규정을 중복하여 적용할 수 없다. <개정 2019.1.3.>

제16조(사업타당성 분석용역) 도지사는 외국인투자기업 또는 외국투자가가 신규투자 또는 새로운 사업장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투자실현 가능성 및 기대효과 등 타당성 분석을 위하여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19.1.3.>

제17조(공유재산임대 및 매각특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 등에게 매각한 토지 등의 매입대금의 분할납부 등과 외국인투자기업 등에게 토지 등을 임대하는 경우 대부료 감면율은 「경상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4장 투자유치진흥기금의 설치

제18조(기금의 설치) ① 도지사는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따라 투자유치 지원의 재원 확보를 위한 경상남도 투자유치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도 및 시·군의 출연금
2. 지방채 발행으로 조성된 자금
3. 차입금
4. 그 밖의 수입금

③ 도지사 및 시장·군수는 제2항제1호의 출연금을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출연할 수 있다.

제19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위한 용도에 사용한다.

1. 각종 보조금의 지급
2. 임대산업단지 용지매입
3. 사업장 부지 매입비 용자 지원 <개정 2019.1.3.>
4.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지원
5. 그 밖에 도지사가 투자유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의 지원대상, 지원기준 등 세부적인 지원 절차는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9.1.3.>

제20조(기금의 관리·운영) ① 기금은 「경상남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7조에 따라 통합기금에 위탁하여야 한다. <개정 2016.01.21.>

②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16.01.21.>

제21조(기금운용의 계획 등) ① 도지사는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도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야 한다.

제22조(기금회계공무원 등) ① 기금의 효율적 관리·운용을 위하여 기금운용관 및 기금출납원을 두되, 기금운용관은 투자통상과장이 되고 기금출납원은 기금업무담당사무관이 된다. <개정 2016.03.24, 2018.12.6>

② 기금의 집행은 「경상남도 재무회계 규칙」에 따른다.

제5장 투자유치위원회 설치·운영

제23조(위원회의 설치) ① 도지사는 투자기업의 효율적인 유치와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9.1.3.>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1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투자유치 소관 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투자유치 소관 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의 균형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위촉한다. <개정 2015.7.2 2017.1.26, 2018.12.6, 2019.11.7.>

1. 경상남도의회에서 추천한 도의원

2. 투자유치 관련기관·단체·기업의 전·현직 임원

3. 투자유치 관련 분야의 변호사·공인회계사 및 대학교수

4. 그 밖의 국내외 투자유치에 관하여 전문적 식견과 경험을 가진 사람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6.03.24, 2018.12.6, 2019.1.3>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의 사임 등 임기만료 외의 사유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19.1.3.>

⑥ 위원회에는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며, 간사는 투자유치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투자유치 담당사무관이 된다. <신설 2019.1.3.>

제24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를 심의한다.

1. 국내기업 및 외국인투자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주요 시책

2. 제20조에 따른 경상남도 투자유치진흥기금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3. 국내기업투자촉진지구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국내기업 및 외국인투자의 고충처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25조(회의 소집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하며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6조(위원의 수당과 여비지급)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상남도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7조(위원의 제척 등) ① 위원회의 위원은 자신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의결에는 제척된다.

② 심의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그 사유를 소명하고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위원회의 위원이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6장 보조금의 지원 등

제28조(시·군의 투자기업유치에 대한 보조금 지원 등) ① 도지사는 시장·군수의 투자기업 지원 신청에 따라 투자기업에 지원하는 보조금 및 융자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1.3.>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또는 융자금의 도와 시·군의 부담비율 및 지원절차 등은 시장·군수와 협의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개정 2019.1.3.>

③ 삭제 <2019.1.3.>

제29조(투자기업의 사후관리) ①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투자유치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관하여 지원을 받은 기업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에게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계 공무원에게 조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10.29.>

② 시장·군수는 보조금 등을 지원받은 기업의 투자계획의 이행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0조(지원 등의 취소 및 환수 등) ① 도지사는 이 조례에 따른 보조금 또는 융자금의 지원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지원을 취소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원받은 보조금은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고, 융자금은 조기상환을 명하여야 한다.

1. 사업개시일부터 규칙으로 정하는 사후관리기간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휴·폐업한 경우 <개정 2019.1.3.>
2.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았다고 인정될 경우
3. 지원대상이 된 관련 사업을 포기하거나 축소한 경우
4. 부지매입 또는 임차 계약을 체결한 후 2년 이내에 사업장의 건설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융자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사업장의 건설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개정 2019.1.3.>
5. 사업장을 준공한 후 2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가동하지 아니한 경우 <개정 2019.1.3.>
6. 사업장의 공사가 예정공정에 현저히 미달하거나 완공의 가망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개정 2019.1.3.>
7.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이 규칙으로 정하는 사후관리기간 동안 정산 시의 고용인원을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
8. 융자금을 지원받은 기업이 규칙으로 정하는 사업기간 내에 사업계획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9. 그 밖에 보조금 또는 융자금 지원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환수 또는 조기상환하여야 할 보조금 또는 융자금에 대해서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31조(지원받은 기업의 의무) ①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지원받은 기업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당초 계획된 부지에서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다만, 부지매입금을 지원받은 기업이 착공 전에 불가피한 사유로 당초 계획된 부지에서 사업을 추진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도지사의 사전 승인을 받아 사업 부지를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9.1.3.>

②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사업계획서상의 사업을 이행 기간 이상 경영하고 고용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32조(이중지원 금지) ①이 조례에서 정한 보조금 또는 융자금은 중복 지원할 수 없다. 다만, 제6조의2에 따른 투자촉진기반시설 지원금을 제외한다.
<개정 2019.1.3.>

② 도지사는 보조금을 지원 받으려는 기업이 국가나 도 등으로부터 같은 목적의 다른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신설 2019.1.3.>

제7장 보칙

제33조(투자유치자문관) ① 도지사는 국내외 투자유치전문가를 경상남도 투자유치자문관(이하 “자문관”이라 한다)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② 자문관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비, 여비, 그 밖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2017.8.3.>

제34조(시·군 유치활동 지원) ① 도지사는 시·군의 투자유치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군수는 유치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급이 예상되는 경우 미리 도지사 와 서면으로 협의하여야 한다.

제35조(투자유치 기여자 보상) 도지사는 국내외 투자 및 기업 유치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되는 개인 또는 기업·단체(법인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할 수 있다.

제3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외국인 투자촉진법

제14조(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투자유치활동에 대한 지원)

① 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제18조에 따른 외국인투자지역의 조성, 외국인투자기업등에 임대할 용지 매입비의 용자, 토지등의 임대료 감면 및 분양가액 인하(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등을 외국인투자기업등에 임대료를 감면하여 임대하거나 조성원가 이하로 분양할 수 있도록

그 감면분(減免分) 또는 분양가액과 조성원가의 차액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교육훈련보조금 등 각종 보조금의 지급, 그 밖에 외국인투자유치사업에 필요한 자금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최대한 지원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자금을 지원하는 기준과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인투자위원회가 정한다. 이 경우 자금 지원 기준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투자유치 노력과 실적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

③ 국가는 매년 제1항에 따른 지원자금의 규모를 미리 예측하여 이를 예산에 계상(計上)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는 외국인투자유치를 촉진하거나 외국인투자환경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용보조금 등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등에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 1. 30.]

「거창군 걷는 길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거창군 걷는 길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66조의2 규정 및 「거창군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2월 4일

거창군의회 의장

1. 자치법규명 : 「거창군 걷는 길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2. 제정이유

○ 지역역사·문화·자연환경 등을 연계한 걷는 길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군민의 건강증진과 지역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걷는 길 조성의 목적, 적용범위, 책무 등을 정함(안 제1조 ~ 제3조)

나. 걷는 길 조성의 원칙 및 조성범위를 정함(안 제4조)

1) 조성원칙 : 공공성과 심미성의 향상, 친환경적 설계 및 배치, 지역주민의 의견존중, 관련기관·단체 등과 협의

2) 조성범위

-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 숲길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원,

녹지 안에서 보행자의 통행에 제공되는 길

- 강길, 독길, 등산로

- 그 밖에 국가, 경상남도 또는 군이 관광자원을 활용하기 위하여 문화탐방로, 생태탐방로, 탐방로 등으로 지정·조성한 길

다. 걷는 길 조성 및 운영 종합계획 수립(안 제5조)

라. 활성화사업 추진 및 지원(안 제6조)

1) 정보망의 체계적 구축·운영

2) 전문인력의 양성

3) 이해증진을 위한 홍보

4) 보행자 및 탐방객의 안전관리

5) 명품길 지정·운영

6) 협력체계 구축·운영 등

7) 걷는 길 유지·보수 및 새로운 코스의 개발

8) 편의시설 설치 및 운영

마. 명품길 지정·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7조)

바. 협력체계의 구축·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8조 ~ 9조)

4. 입법예고기간 : 2019. 12. 2. ~ 2019. 12. 9.(7일간)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19. 12. 9.(월)

나. 제출방법 : 방문, 우편, 팩스 등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라. 제출기관 : 거창군의회(의회사무과)

○ 주소 : 경남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3, (우) 50132

○ 전화 : 055)940-8063, FAX: 055)940-8059

- 붙임 1.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1부.
2. 거창군 걷는 길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부.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 거창군 걷는 길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성명(단체명):

○ 주 소:

○ 전 화 번 호:

입법예고내용	의 건	비 고

거창군 걷는 길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민의 건강증진과 지역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지역역사·문화·자연환경 등을 연계한 걷는 길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거창군 걷는 길(이하 “걷는 길”이라 한다) 조성 및 운영에 관해서는 다른 조례에서 달리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3조(책무 등) ①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거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쾌적한 환경에서 군민 및 관광객(이하 “군민 등”이라 한다)에게 건강증진과 관광자원 등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해야 한다.

② 군민 등은 자신의 건강증진과 관광자원 등의 체험주체임을 인식하여 제1항에 따른 군의 시책에 스스로 참여하며, 해당 관광자원 등을 보전·보호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조성·원칙 및 범위) ① 군수는 군민 등의 건강증진과 해당 지역역사·문화·자연환경 등 관광자원을 활용한 체험기회의 지속적 제공을 위하여 걷는 길을 조성한다.

② 걷는 길의 조성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른다.

1. 공공성과 심미성을 고려한 공공디자인 구현
2. 친환경적 설계 및 배치
3. 주변 지역주민의 의견존중
4. 관련기관·단체 등(이하 “기관·단체 등”이라 한다)과 협의

③ 걷는 길의 조성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 숲길
2.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원, 녹지 안에서 보

행자의 통행에 제공되는 길

3. 강길, 독길, 등산로

4. 그 밖에 국가, 경상남도 또는 군이 관광자원을 활용하기 위하여 문화탐방로, 생태탐방로, 탐방로 등으로 지정·조성한 길

④ 군수는 걷는 길을 조성하거나 변경·폐지한 경우에는 군 인터넷홈페이지 등에 게시하고, 각종 매체 등을 이용하여 홍보할 수 있다.

제5조(걷는 길 조성 및 운영 종합계획) ① 군수는 걷는 길의 조성 및 체계적 관리 및 이용의 활성화를 위하여 5년마다 거창군 걷는 길 조성 및 운영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걷는 길 조성 및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목표 및 방향
2. 현황 및 전망
3. 제6조에 따른 활성화사업의 추진 및 지원범위
4. 필요한 재원조달 방안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활성화사업 추진 및 지원) ① 군수는 걷는 길의 원활한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활성화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 있다.

1. 정보망의 체계적 구축·운영. 이 경우 기관·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2. 다음 각 목의 임무를 수행하는 전문인력의 양성
 - 가. 걷는 길의 보호 및 지역역사·문화·자연환경 등 관광자원 홍보
 - 나. 올바른 걷기문화 교육
3. 군민 등의 이해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목의 방법에 따른 홍보
 - 가. 조성 및 운영상 모범모델의 발굴 및 확산
 - 나. 안내 등을 위한 자료제작
 - 다. 전문가 포럼, 워크숍, 걷기 행사, 주민설명회 개최
4. 군민 등과 보행자 및 탐방객의 안전관리

5. 거창군 명품길(이하 “명품길”이라 한다) 지정·운영
6. 협력체계 구축·운영
7. 걷는 길 유지·보수 및 새로운 코스의 개발
8. 편의시설 설치 및 운영
9. 그 밖에 군수가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활성화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 등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명품길 지정·운영) ① 군수는 생태·문화탐방 등 지역의 지리적·문화적 체험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걷는 길 중에서 명품길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명품길을 지정할 경우에는 공익성, 심미성, 경관성, 역사성, 환경성 등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③ 군수는 지정된 명품길에는 군민 등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해당 안내표지를 설치하고, 그 지정배경·가치·의미 등에 관한 설명을 담을 수 있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운영) 군수는 걷는 길의 효과적 조성 및 운영과 활성화사업의 체계적 지원을 위하여 기관·단체 등과 교류·협력하거나 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협력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다.

제9조(업무의 위탁) 군수는 걷는 길의 관리 운영 및 활성화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업무의 일부를 기관·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전에 군수가 조성하거나 지정한 걷는 길은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시행 2017. 7. 26.] [법률 제14839호, 2017. 7. 26., 타법개정]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3. 생략

4. 지역개발과 주민의 생활환경시설의 설치·관리에 관한 사무

가. 지역개발사업

나. 지방 토목·건설사업의 시행

다. 도시계획사업의 시행

라. 지방도(地方道), 시군도의 신설·개수(改修) 및 유지

마. 주거생활환경 개선의 장려 및 지원

바. 농촌주택 개량 및 취락구조 개선

사. 자연보호활동

아. 지방하천 및 소하천의 관리

자. 상수도·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

차. 간이급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

카. 도립공원·군립공원 및 도시공원, 녹지 등 관광·휴양시설의 설치 및 관리

타. 지방 궤도사업의 경영

파. 주차장·교통표지 등 교통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

하. 재해대책의 수립 및 집행

거. 지역경제의 육성 및 지원

5. 교육·체육·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사무

가. 유아원·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설치·운영·지도

나. 도서관·운동장·광장·체육관·박물관·공연장·미술관·음악당 등 공공교육·체육·문화시설의 설치 및 관리

다. 지방문화재의 지정·보존 및 관리

라. 지방문화·예술의 진흥

마. 지방문화·예술단체의 육성

6. 지역민방위 및 지방소방에 관한 사무

□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약칭:산림휴양법)

[시행 2018. 8. 22.] [법률 제15394호, 2018. 2. 2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법은 산림문화와 산림휴양자원의 보전·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산림문화·휴양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0. 3. 17., 2011. 3. 9., 2011. 7. 14., 2015. 1. 20., 2018. 2. 21.>

1. "산림문화·휴양"이라 함은 산림과 인간의 상호작용으로 형성되는 총체적 생활양식과 산림 안에서 이루어지는 심신의 휴식 및 치유 등을 말한다.
2. "자연휴양림"이라 함은 국민의 정서함양·보건휴양 및 산림교육 등을 위하여 조성한 산림(휴양시설과 그 토지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3. "산림욕장"(山林浴場)이란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산림 안에서 맑은 공기를 호흡하고 접촉하며 산책 및 체력단련 등을 할 수 있도록 조성한 산림(시설과 그 토지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4. "산림치유"란 향기, 경관 등 자연의 다양한 요소를 활용하여 인체의 면역력을 높이고 건강을 증진시키는 활동을 말한다.
5. "치유의 숲"이란 산림치유를 할 수 있도록 조성한 산림(시설과 그 토지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6. "숲길"이란 등산·트레킹·레저스포츠·탐방 또는 휴양·치유 등의 활동을 위하여 제23조에 따라 산림에 조성한 길(이와 연결된 산림 밖의 길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7. "산림문화자산"이란 산림 또는 산림과 관련되어 형성된 것으로서 생태적·경관적·정서적으로 보존할 가치가 큰 유형·무형의 자산을 말한다.
8. "숲속야영장"이란 산림 안에서 텐트와 자동차 등을 이용하여 야영을 할 수 있도록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조성한 공간(시설과 토지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8의2. "산림레포츠"란 산림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험형·체험형 레저스포츠를 말한다.

9. "산림레포츠시설"이란 산림레포츠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시설과 그 부대 시설을 말한다.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산림문화·휴양의 진흥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산림문화·휴양자원의 보전과 이용이 조화와 균형을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약칭:공원녹지법)
[시행 2019. 6. 19.] [법률 제15998호, 2018. 12. 1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법은 도시에서의 공원녹지의 확충·관리·이용 및 도시녹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여 건전하고 문화적인 도시생활을 확보하고 공공의 복리를 증진시키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 4. 14., 2013. 3. 23., 2013. 5. 22., 2018. 12. 18.>

1. "공원녹지"란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시민의 휴식과 정서 함양에 이바지하는 다음 각 목의 공간 또는 시설을 말한다.

가. 도시공원, 녹지, 유원지, 공공공지(公共空地) 및 저수지

나. 나무, 잔디, 꽃, 지피식물(地被植物) 등의 식생(이하 "식생"이라 한다)이 자라는 공간

다.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간 또는 시설

2. "도시녹화"란 식생, 물, 토양 등 자연친화적인 환경이 부족한 도시지역(「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을 말하며,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관리지역에 지정된 지구단위계획구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공간(「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산림은 제외한다)에 식생을 조성하는 것을 말한다.

3. "도시공원"이란 도시지역에서 도시자연경관을 보호하고 시민의 건강·휴양 및 정서생활을 향상시키는 데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설치 또는 지정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다만, 제3조, 제14조, 제15조, 제16조, 제16조의2, 제17조, 제19조, 제19조의2, 제19조의3, 제20조, 제21조, 제21조의2, 제22조부터 제25조까지, 제39조, 제40조, 제42조, 제46조, 제48조의2, 제52조 및 제52조의2에서는 나목에 따른 도시자연공원구역을 제외한다.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나목에 따른 공원으로서 같은 법 제30조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공원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도시자연공원구역(이하 "도시자연공원구역"이라 한다)

4. "공원시설"이란 도시공원의 효용을 다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도로 또는 광장

나. 화단, 분수, 조각 등 조경시설

다. 휴게소, 긴 의자 등 휴양시설

라. 그네, 미끄럼틀 등 유희시설

마. 테니스장, 수영장, 궁도장 등 운동시설

바. 식물원, 동물원, 수족관, 박물관, 야외음악당 등 교양시설

사. 주차장, 매점, 화장실 등 이용자를 위한 편의시설

아. 관리사무소, 출입문, 울타리, 담장 등 공원관리시설

자. 실습장, 체험장, 학습장, 농자재 보관창고 등 도시농업(「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도시농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위한 시설

차. 그 밖에 도시공원의 효용을 다하기 위한 시설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5. "녹지"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나목에 따른 녹지로서 도시지역에서 자연환경을 보전하거나 개선하고, 공해나 재해를 방지함으로써 도시경관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것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1. 9. 16.]

□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약칭:공공디자인법)
[시행 2019. 1. 25.] [법률 제16047호, 2018. 12. 24.,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법은 공공디자인의 문화적 공공성과 심미성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가 및 지역 정체성과 품격을 제고하고 국민의 문화향유권을 증대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디자인"이란 일반 공중을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이 조성·제작·설치·운영 또는 관리하는 공공시설물등에 대하여 공공성과 심미성 향상을 위하여 디자인하는 행위 및 그 결과물을 말한다.

2. "공공디자인사업"이란 국가기관등이 공공시설물등의 공공디자인을 구현하는 과정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공공디자인 관련 기획·조사·분석·자문·설계 및 제작·설치·관리 등을 말한다.

3. "공공시설물등"이란 일반 공중을 위하여 국가기관등이 조성·제작·설치·운영 또는 관리하는 다음 각 목의 시설물과 용품, 시각 이미지 등을 말한다.

가. 대중교통 정류소, 자전거 보관대 등 대중교통시설물

나. 차량 진입 방지용 말뚝, 펜스 등 보행안전시설물

다. 벤치, 가로 판매대, 파고라 등 편의시설물

라. 맨홀, 소화전, 신호등 제어함 등 공급시설물

마. 가로수 보호대, 가로 화분대, 분수대 등 녹지시설물

바. 안내표지판, 현수막 게시대, 지정벽보판 등 안내시설물

사. 그 밖에 가목부터 바목까지의 시설물에 준하는 시설물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공공디자인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필요한 재원의 확충과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시행일 : 2014.05.28.]

제 1조 (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04조에 따라 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중 일부를 군산하기관이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사무를 정하여,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통한 행정능률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민간위탁"이란 각종 법률에 규정된 군수의 사무중 일부를 군산하기관이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로 책임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수탁기관"이란 군수의 사무를 위탁받은 군산하기관이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제 3조 (적용범위) 민간위탁사무에 관하여는 다른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 4조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등) ① 군수는 법령 및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사무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군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군민생활과 직결된 단순행정사무(개정 2013.6.12)
- ② 군수는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정기적·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제6조에 따른 거창군 민간위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민간위탁 할 수 있다.(개정 2013.6.12)
- ③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는 국가·도위임사무는 위임기관의 장의 승인을 미리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군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이 경우 자치사무에 있어 같은 수탁기관에 재계약 할 때에도 위탁기간 만료일 60일 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및 후단신설 2013.6.12)

④ 군수는 위탁사무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3.6.12)

제 5조 (수탁기관의 선정) ① 군수는 민간위탁사무의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인력과 기구, 재정부담능력, 시설과 장비, 기술보유의 정도, 책임능력과 공신력, 지역간 균형분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정한 기관을 수탁기관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②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제1항의 심사기준 및 심사항목별 배점기준 등을 명시하여 공고한다.(전문개정 2013.6.12)

③ 수탁기관을 공개모집할 경우에는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를 제출 하도록 하고, 해당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제1항의 선정기준에 따른 적격기관을 선정하도록 한다.(개정 2013.6.12)

제6조(민간위탁심의위원회) ① 군수는 민간위탁 대상사무 선정, 수탁기관 선정, 같은 수탁기관에 재계약 시 적정여부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위원 수의 4분의 3이상이 되어야 한다.

1. 군 소속 공무원(개정2014.5.28)

2. 대학교수, 변호사 등 민간위탁 대상사무와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개정2014.5.28)

④ 위원회는 민간위탁 사무의 성격에 따라 소관부서에서 구성하고, 수탁기관 선정 및 평가 등이 끝나면 자동 해산한다.

⑤ 위원회는 사업계획서의 심사 및 현장확인과 민간위탁 신청인에 대하여 필요한 소명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⑥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 「거창군 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8. 1. 14 개정 2013.6.12)

제7조(위원의 제척·기피 및 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당 심의대상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심의대상기관(법인·단체나 기관인 경우 대표자)과 친족관계인 경우
2. 위원이 심의대상기관에 심의대상 안건과 관련하여 용역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3.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심의대상기관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 한 경우
4. 그 밖에 위원이 심의대상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호이동2014.5.28)

② 심의대상기관은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을 받은 위원은 그 기피여부에 대한 결정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은 제1항이나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3.6.12)

제8조(책임의 소재 및 명의표시) ① 수탁사무의 처리에 관한 책임은 수탁기관에 있으며, 군수는 그에 대한 감독책임을 진다.

② 수탁사무에 관한 권한을 행사 할 때에는 수탁기관의 명의로 시행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3.6.12)

제9조(협약체결 등) ① 군수는 수탁기관이 선정되면 수탁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협약내용은 반드시 공증을 하여야 한다.

② 협약서에는 수탁기관의 의무, 위탁내용, 위탁기간, 예산지원액 및 협약내용 위반 시 의무이행 등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군수는 위탁기간을 연장하여 재협약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민간위탁 사무처리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의 적정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3.6.12)

제10조(수탁기관의 의무) ① 수탁기관은 법령과 이 조례 및 위탁계약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군수의 명령이나 처분 등 지시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수탁기관은 위탁사무를 처리할 때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사무의 지연처리, 불필요한 서류의 요구, 불공정한 사무의 처리 및 비용 등의 부당징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수탁기관은 위탁시설, 장비, 비용 등을 성실히 관리·집행하여야 하며, 위탁받은 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수탁기관은 위탁받은 사업에 대한 주요사업계획을 변경하거나, 시설을 증·개축 또는 추가로 시설을 신축하는 경우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후단삭제 2014.5.28)

⑤ 수탁기관은 수탁사무의 종류별로 처리부서, 처리기간, 처리과정, 처리기준, 구비서류, 서식과 수수료 등을 구분하여 명시한 사무편람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군수의 승인을 받아 사무편람을 작성한다.(전문개정 2013.6.12)

제11조(위탁의 취소)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기관이 제10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수탁기관이 위탁계약 조건을 위반한 경우
3. 수탁기관이 제12조의 지도·감독 결과 위탁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된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탁을 취소할 경우 수탁기관에 미리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전문개정 2013.6.12)

제12조(지도·감독) ① 군수는 민간위탁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수탁기관을 지도·감독하고, 필요할 때에는 보고하게 하거나 위탁사무에 대한 서류,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민간위탁사무의 처리내용에 대하여 매년 한 차례 이상 업무성과를 평가하고, 감사를 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수탁기관의 수탁사무의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할 경우 적절한 시정조치를 하여야 하며,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해당 사무를 취소 또는 정지시키고자 할 때에는 그 취소 또는 정지의 사유를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전문개정 2013.6.12)

제 13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